

통계청 유관법인 자료집

2003. 8.



통계청

머 리 말

오늘날 우리사회는 대내외적으로 정보화·지방화·국제화 등 새로운 추세가 밀어닥치면서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통계환경에 영향을 미쳐 향후 통계행정의 방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계청은 연구, 개발, 홍보 등 통계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학술대회, 워크숍 등의 참가 및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통계청 유관법인이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본래의 설립 목적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급격한 통계행정 환경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통계지식과 기법 등에 대한 직원 여러분의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되며, 유관법인에 대한 실무지식도 통계행정에서 기본 소양으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집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고, 나아가 통계발전을 위한 기반 강화 및 관련사업의 활성화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3년 8월

통계기획국장 정택환

□ 한국통계학회	1
○ 일반현황	1
○ 설립목적	1
○ 주요사업	2
○ 정관	3
○ 정관운영세칙	11
○ 학술발표회 운영위원회 운영세칙	14
○ 포상위원회 운영세칙	15
○ JKSS 편집위원회 운영세칙	17
○ 응용통계연구 편집위원회 운영세칙	20
○ 한국통계학회논문집 편집위원회 운영세칙	24
○ 임원진 주소 및 연락처	27
○ 산하연구회	28
○ 산하지회	33
○ 입회안내	35
○ 학회지	39
□ 한국인구학회	40
○ 일반현황	40
○ 설립목적	41
○ 주요사업	41
○ 정관	42
○ 임원진 주소 및 연락처	49
○ 입회안내	50
○ 학회지	51
○ [한국인구학] 원고제출요강, 심사절차 및 원고작성지침	51

□ 한국조사연구학회	57
○ 일반현황	57
○ 설립목적	58
○ 주요사업	58
○ 정관	59
○ 조사윤리강령	65
○ 여론조사 보도지침	68
○ 임원진 주소 및 연락처	71
○ 입회안내	74
○ 학회지	76
 □ 대한통계협회	 77
○ 일반현황	77
○ 설립목적	77
○ 연혁	78
○ 주요사업	79
○ 정관	81
○ 임원진 주소 및 연락처	88
○ 회원의 구분	89
○ 회원에 대한 지원	89
○ 통계자료 제공비용 산정규정	91
○ 통계협회지	93
 □ 통우회	 94
○ 일반현황	94
○ 설립목적	94
○ 주요사업	97
○ 정관	98
○ 임원진 주소 및 연락처	105
○ 입회안내	106

□ 한국응용통계연구원	108
○ 일반현황	108
○ 설립목적	108
○ 주요사업	109
○ 정관	110
○ 임원진 주소 및 연락처	115
 □ 각종위원회 명단	117
○ 통계위원회	119
○ 통계청자세정부업무평가위원회	128
○ 통계청통계품질심의위원회	129
○ 생물·인터넷산업분류 전문가위원회	131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전문가위원회	132
 □ 관련법령	133
○ 민법	135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146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154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167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171
○ 재정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및감독에관한규칙	176
○ 법인세법시행규칙	180
○ 법인세법상 공익기부금 손금인정단체 추천요령	184
○ 지정기부금단체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186

통계청 유관법인 현황

2003. 8. 현재

법인	대한통계 협회	한국통계 학회	한국인구 학회	한국조사 연구학회	통 우 회	한국통계 통계연구원	
설립일	63. 5. 6.	87. 12. 2.	95. 12. 9.	2000. 1. 7.	87. 12. 31.	70. 10. 10.	
회장(대표)	민태형	김우철	김태현	이계오	김경중	김효진	
법인성격	재단법인	사단법인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소재지 (주소)	논현동 71번지 (서울통계사무소 1층) 135-010	역삼동635-4 (과학기술회관 308호) 135-703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363-791	성북구 정동동 861-1 국민대 사회과학대학 136-702	논현동 71번지 (서울통계사무소 1층) 135-010	여의도동17-26 (삼환카푸빌 4층) 150-010	
홈페이지	www.stat.or.kr	www.kss.or.kr	society.kordic.re.kr/~pak	soback.kornet.net/~kasr	www.statob.or.kr	www.koris.org	
전 화 (fax) (e-mail)	3443-7954~6 (3443-7957) kosa@nso.go.kr	567-2859 (564-7285) office@kss.or.kr	043-230-3612 serong2@naver.com	02-910-4402 (02-910-4429) kwjung@mail.kookmin.ac.kr	3444-4429 (3443-7957)	785-6070 (785-5150) kasri@chollian.net	
담당자	신경근	장지연 양혜진	엄태연	정광호	김웅구	오미희	
임원진	회 장 1 부회장 1 이 사 19 감 사 1	회 장 1 부회장 3 이 사 11 감 사 2	회 장 1 부회장 1 이 사 14 감 사 2	회 장 1 부회장 2 이 사 26 감 사 2	회 장 1 부회장 2 이 사 12 감 사 1	이사장 1 이 사 11 감 사 2	
현임원 선출	03. 2. 26	01. 11. 9	02. 12. 30	02. 11. 30	02. 3. 26	99. 1. 31	
인원 현황	회원수	67(기관)	701, 198(기관)	398, 59(기관)	288, 20(기관)	406	32
	상근 직원수	5	2	-	-	2	24
회장 약력	38년생 연세대 및 동대학원 경제학과졸 통계청장 및 소비자 보호원장 역임	49년생 서울대 및 동 대학 원 수학과 졸 현 서울대 계산통계 학과 교수	47년생 고려대 통계학과졸 호주공립대 인구학 석사 및 박사 전 조사통계국 사무관 통계위원회전문위원 현 고려대 일반사회 교육과 교수	47년생 서울대 수학과 졸, 통계학 석사 통계학 박사 노스캐롤라이나주립 대 통계학 박사 통계위원회전문위원 전 공사 전산통계과 수석연구관	36년생 통계청 기획국장 공정위 상임위원 한국증권전산(주) 사 장 역임	51년생 군명교졸	

한국통계학회

□ 일반현황

- 영문명칭 :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 주소 : 서울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308호)
우 135-703
- 전화 : 567-2859, fax : 564-7285, e-mail : office@kss.or.kr
- 홈페이지 : www.kss.or.kr
- 창립일 : 1971.12.17(법인등록 : 1987.12. 2.)
- 법인성격 : 사단법인
- 예 산 : 38,835만원(2002년)
- 인력(상근) : 2명
- 회원수
 - 정 회 원 : 415
 - 학생회원 : 66
 - 종신회원 : 220
 - 단체회원 : 175
 - 기관회원 : 23

□ 설립목적

1971년 통계학 및 통계의 발전과 이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 및 연구조성을 목적으로 창립

□ 주요사업

- 연 2회의 춘·추계 학술논문발표회 개최
- 통계학술지의 간행 - 세 종류의 학술논문집을 연 9회 발간
「Journal of the Korea Statistical Society」, 「응용통계연구」, 「한국 통계학회논문집」
- 외국 통계학회와의 교류 및 공동 학술회의 개최
- 통계인들간의 정보교류를 위한 학회소식지 연 6회 발간
- 학회산하 7개 연구회의 워크숍, 논문발표회
- 학회산하 6개 지회의 워크숍, 논문발표회
- 『통계학용어집』, 『회원명부』 등의 간행물 발간

한국통계학회 정관

2001. 5. 25.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비영리 단체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통계학 및 통계의 발전과 이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 및 연구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통계학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3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 대학 또는 통계기관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통계연구 발표회의 개최
2. 통계학술지의 간행
3. 국내 통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토의 및 건의
4. 통계의 이론개발 및 보급, 응용을 위한 제반 학술활동 주관
5. 외국 통계학회와의 교류 및 공동 학술회의 개최
6. 위의 목적에 일치하는 기타 사업

제5조 (기구)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다만, 상설위원회와 연구회 및 지회에 관한 규정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1. 사무국
2. 편집위원회
3. 각종 연구회
4. 각종 위원회
5. 지 회

제6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 본회가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공여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1997년 5월 23일 개정)

제7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가. 통계학 또는 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나.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통계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교수, 연구원
및 통계직원

다. 기타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자

다만, 정회원은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 종신회원이 될 수 있다.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에서 통계 또는 관련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3. 기관회원

통계학에 관련된 학교와 본회의 사업 취지에 찬동하는 기관 및 단체

4. 도서관 회원

대학, 연구소 등의 부설 도서관 및 전문도서관

5. 학파회원

통계학 또는 관련학문분야의 학파 및 기타전공단위

제8조 (입회와 퇴회)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퇴회를 원하는 자는 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의 임무와 권리) 각급 회원은 운영세칙이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회합에 참석하고 학회지, 회보를 받을 수 있다.

2.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 (제명) 3년이상 회비를 체납한 회원은 회장이 평의원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3명
3. 이 사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하여 7인이상 15인이하로 한다.
4. 감 사 2명

제12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선출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다만, 결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한다.
2. 이사는 평의원회의에서 선출한다.
3. 임원의 임기가 끝난 후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 확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3조 (회장, 부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칙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또한 본회의 업무를 분장 담당하여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담이사를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1. 총무이사 : 기획, 재무, 섭외 등의 업무
2. 편집이사(약간명) : 학술지 등의 간행물에 대한 편집 등에 관한 업무
3. 사업이사 : 학회사업에 관한 업무
4. 학술이사 : 학술발표회, 소식지 등의 학술에 관한 업무

제1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평의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래도 시정되지 않을 때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총회, 평의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사항 또는 총회, 평의회, 이사회와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평의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평의원, 및 이사회와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16조 (기구의 구성) ① 제5조제1호의 기구인 사무국에는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총무이사가 회장을 보좌하여 사무국을 운영한다.

② 제5조제2호에 의해 구성된 편집위원회의 편집위원은 편집이사가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편집이사가 편집위원장이 되고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③ 제5조제4호의 위원장은 평의회의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 4 장 총회

제17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및 평의원의 선출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8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가을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이를 소집한다.

② 회장은 회의 안전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일 7일 전에 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서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회원 100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 소집을 기피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신상에 관계되는 사항 중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평의원회

제22조 (평의원회의 설치)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제23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의 선출
2.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업계획안, 예산결정안, 정관변경안 등에 대한 동의

3. 중요 업무의 보고청취 및 자문
4. 운영세칙의 심의 및 승인
5. 운영세칙에서 정한 각종 사업의 승인

제24조 (평의원회의의 구성, 선출 및 임기) ① 평의원은 당연직 평의원, 기관 평의원 및 일반 평의원으로 구성된다.

② 당연직 평의원은 전임회장, 현임 연구회장 및 지회장으로 구성된다.

③ 기관 평의원과 일반 평의원은 총회에서 회원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④ 일반 평의원은 20명이상 40명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5조 (평의원회의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평의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평의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감사 및 편집위원은 평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평의원은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의결은 출석의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26조 (이사회회의의 기능) 이사회의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
4. 정관 및 내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
6. 기타 중요사항의 심의와 의결

제27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 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제 7 장 제 정 및 회 계

제30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또는 보조금
3. 사업에서 부수되는 수입
4.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5. 기타 수입금

제31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 (세입세출예산)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3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34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36조 (정관 개정) 본회의 정관 개정은 총회에서 행하며,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국통계학회 정관 운영세칙

2001. 5. 25. 제정

제 1 장 상설위원회

제1조 (편집위원회) 정관 제16조제2항에 의거하여 구성되는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논문 투고 요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투고 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
3. 투고 논문 게재료에 관한 사항

제2조 (학술발표회 운영위원회) 정관 제5조제4항에 의거하여 구성되는 학술발표회 운영위원회는 춘·추계 학술발표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춘·추계 학술발표회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술발표회 발표논문에 관한 심사
3. 발표논문의 안배 및 좌장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술발표회 계획에 관한 사항

제3조 (포상위원회) 정관 제5조제4항에 의거하여 구성되는 포상위원회는 통계학자의 학술활동을 장려하고 통계발전에 기여한 분과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구성한다.

제4조 (상설위원회의 소집) 각 상설 위원회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2 장 지회 (1996년 10월 21일 개정)

제5조 (지회) 정관 제5조제5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지회를 둔다.

1. 강원 경기 인천지회

2. 대구 경북지회
3. 부산 경남지회
4. 충청지회
5. 호남 제주지회
6. 북미주지회

제6조 (지회의 회원) 지회의 정회원은 당해 지역에서 거주 또는 근무하거나, 지회의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본 학회의 회원으로 한다.

제7조 (지회의 의무) ① 지회는 본 법인의 총회, 평의원 및 이사회에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회장은 매년 12월말 이전에 다음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회 회원 명부
2. 임원명부와 임기
3. 사업 및 회계보고
4. 사업계획

제8조 (법인의 재정 보조) 본 법인은 지회의 재정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회(1995년 5월 26일 개정)(2001년 5월 25일 개정)

제9조 (연구회) 정관 제5조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회를 둔다.

1. 공업통계연구회
2. 생물통계연구회
3. 조사통계연구회
4. 통계계산연구회
5. 통계교육상담연구회
6. 공식통계연구회
7. 베이지안통계연구회

제10조 (연구회회원) 연구회는 본 학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 (연구회의 의무) ① 연구회는 본 법인의 총회, 평의원 및 이사회회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장은 매년 12월말 이전에 다음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회 회원 명부
2. 임원명부와 임기
3. 사업 및 회계보고
4. 사업계획

제12조 (법인의 재정보조) 본 법인은 연구회 사업의 재정 보조를 할 수 있다.

제 4 장 회비

(1994년 11월 4일 개정)(1997년 5월 23일 개정)(1998년 5월 29일)(2002년 1월 11일 개정)

제13조 (입회비) 정관 제8조에 의거한 입회비의 액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학생회원, 도서관회원, 학과회원 : 20,000원

제14조 (연회비) ① 정관 제9조에 의거한 연회비의 액수는 다음과 같다.

1. 정 회 원 30,000원
2. 학생회원 15,000원
3. 도서관회원 150,000원
4. 학과회원 120,000원

② 정회원은 다음 종신회비(일시금)로서 연회비를 대신할 수 있다.

1. 종신회비
 - 500,000원 (65세 미만의 정회원 경우)
 - 100,000원 (65세 이상의 정회원 경우)

③ 기관회원의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한국통계학회 학술발표회 운영위원회 운영세칙

2001. 5. 25. 제정

제1조 (목적) 이 운영세칙은 정관 제5조제4항에 의거하여 학회 춘·추계 학술발표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성한다. 이에 학술발표회에 관련된 사항을 한국통계학회 학술발표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제2조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연구한다.

1. 춘·추계 학술발표회에 관한 기본 운영계획
2. 학술발표회에 관한 개선방안
3. 학술발표회 발표논문에 관한 심사
4. 발표논문의 안배 및 좌장 선정에 관한 사항
(초청강좌 주제 및 연사 섭외 등)
5. 기타 학술발표회계획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평의원회의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4조 (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학회 사무국에서 관장한다.

한국통계학회 포상위원회 운영세칙

2001. 5. 25. 제정

2002. 5. 24. 개정

제1조 (목적) 이 운영세칙은 정관 제5조제4항에 의거하여 통계학회 회원의 학술활동을 장려하고 통계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포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조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통계학 학술논문의 수상자를 선정한다.
2. 통계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의 수상 대상을 선정한다.

제3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평의원회의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3. 신진통계학자 학술논문상 소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장을 포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4조 (신진통계학자 학술논문상)

1. (목적) 신진 통계학자 학술논문상 (이하 "신진학술상"이라 칭함)은 신진통계학자의 학술활동을 격려하고, 한국통계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우수한 논문을 유치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2. (대상) 신진학술상은 최종학위를 취득한지 5년이내의 통계학자를 대상으로 한다.
3. (심사 및 시행) 포상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시상은 매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자가 없거나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격년으로 시행할 수 있다. 시상은 회장이 정기 총회에서 시행한다.
4. (심사대상 논문) 전년도의 한국통계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

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공저인 경우에는 제 1 저자가 신진학자인 경우에 대상이 된다.

제5조 (공로상)

1. (목적) 통계학회의 발전과 통계학 분야의 학문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상) 통계학회 회원이나 기관회원이 추천한 개인 또는 기관으로 한다.
3. (심사 및 시행) 포상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수상자 또는 기관을 선정한다. 시상은 매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자 또는 기관이 없거나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행을 유보할 수 있다. 시상은 회장이 정기 총회에서 시행한다.

부 칙

1. 기존의 『신진통계학자 학술논문상(1992년)』 운영세칙을 2001년 5월 25일자로 폐기한다.
2. 이 개정된 세칙은 200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JKSS 편집위원회 운영세칙

1999. 6. 4. 제정

2001. 5. 25. 제정

2002. 5. 24. 개정

제 1 장 편집방침

1. (게재논문) 통계학의 전 분야에 걸쳐 이론 및 응용연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창의성이 있는 논문의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2. (투고규정) 최근 발행된 JKSS에 있는 ‘INSTRUCTIONS FOR AUTHORS’의 내용을 따른다.
3. (논문집의 발간) 논문집은 연간 4회(3월, 6월, 9월, 12월)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된 학술지는 학회사무국에서 학회회원 및 관련 구독처에 배포한다.
4. (주저자의 규정) 게재된 논문의 저자가 2인이상일 경우 주저자가 제1저자의 자리에 위치하도록 편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장은 통계학 제분야에 걸쳐 우수한 연구업적을 갖는 편집위원을 15인이하로 선임하며, 편집위원 중에서 약간명의 편집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평의원회의 동의에 의해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결원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의 업무)

- ① 논문투고에 관한 사항
- ②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
- ③ JKSS 편집 및 인쇄에 관한 제반 사항

4. (편집위원회의 개최)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1년 2회 이상 JKSS 편집위원회를 개최한다. 단, 필요시 편집위원의 요구에 의하여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3 장 논문의 심사

1. (논문심사 절차)

- ① 투고된 논문들은 편집위원장이 접수하여 해당분야의 논문심사를 담당하는 학술지 편집위원에게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진행을 의뢰한다.
- ② 심사진행을 의뢰받은 편집위원은 관련분야가 전공인 익명의 통계학자 2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해당논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③ 논문심사위원회는 관련 편집위원의 주관하에 3차(또는 3차 이하)에 걸쳐 논문의 심사 및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과정을 통해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판단하고, 최종심사결과 및 모든 심사자료를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 ④ 편집위원장은 심사완료된 논문의 심사결과를 저자에게 통보하고, 게재확정된 논문의 편집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한다.
- ⑤ 예고된 기한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관련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독촉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이외의 심사절차에 관한 제반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련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논문심사 기준)

- ① 연구주제의 중요성
- ② 연구내용의 독창성 및 기여도
- ③ 연구방법의 타당성
- ④ 논문의 표현방법

부 칙 (1999년 6월 4일)

이 운영세칙은 1999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년 5월 24일)

이 개정된 세칙은 200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응용통계연구 편집위원회 운영세칙

1999. 6. 4. 제정

2001. 5. 25. 제정

2002. 5. 24. 개정

제 1 장 편집방침

1. (게재 논문) 응용통계연구에는 일반연구논문, 사례연구논문, 연구교신을 게재하되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구분한다.
 - ① 일반연구논문은 통계학의 전반적인 이론과 다양한 분야에의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논문으로 정의한다.
 - ② 사례연구논문은 실제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거나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론에 관해 연구한 논문이다.
 - ③ 연구교신은 일반연구논문이나 사례연구논문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통계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나 통계교육에 유용한 내용, 그리고 회원과 통계 관련분야 종사자들에게 전파할 가치가 있는 내용 등을 연구한 논문을 포함한다.
2. (투고규정) 최근 발행된 응용통계연구에 있는 ‘투고규정’의 내용을 따른다.
3. (논문집의 발간) 논문집은 연간 2회(3월, 9월) 발간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논문의 편수가 많을 경우에는 연간 3회(3월, 7월, 11월) 발간한다.
4. (주저자의 규정) 게재된 논문의 저자가 2인이상일 경우 주저자가 제1저자의 자리에 위치하도록 편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장은 통계학 제분야에 걸쳐 우수한 연구

업적을 갖는 편집위원을 15인이하로 선임하며, 편집위원 중에서 약간명의 편집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평의원회의 동의에 의해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결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 업무)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논문 투고요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②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
- ③ 논문집 편집과 인쇄에 관한 사항
- ④ 논문 게재료에 관한 사항

4. (편집위원회회의 개최) 논문집 편집과 발간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회의를 소집한다. 편집부위원장과 편집위원도 편집위원회회의의 소집을 편집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3 장 논문의 심사

1. (논문심사 방법)

- ①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의 주관하에 2인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전공분야, 심사경험, 연구실적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한다.
- ③ 논문의 내용에 따라서 일반연구논문, 사례연구논문, 연구교신으로 구분되어 심사가 진행되며, 각 분야의 특성에 적합한 논문인지가 우선 검토되고 심사기준에 따라 게재와 탈락으로 판정한다.
- ④ 편집위원의 판단에 따라, 논문심사 전 과정에 걸쳐 논문의 저자를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논문심사 절차)

- ① 저자는 논문원고 4부를 편집위원장이나 편집부위원장에게 투고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확인서를 저자에게 송부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편집위원에게 심사주관을 의뢰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3부와 심사주관의뢰서를 편집위원에게 송부한다

③ 편집위원은 논문의 전공분야에 해당되는 심사위원 2인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편집위원은 논문심사현황표를 기록유지하며, 논문심사의뢰서, 논문심사점검표, 논문1부를 심사위원에게 송부한다.

④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결과를 논문심사점검표에 기록하여 논문심사의견서와 함께 편집위원에게 보고한다.

⑤ 편집위원은 수정/보완 요구된 논문은 저자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한다. 편집위원은 논문수정의뢰서와 논문심사의견서를 저자에게 송부한다.

⑥ 저자는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논문3부와 저자의견서를 편집위원에게 송부한다.

⑦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에게 논문재심사를 의뢰한다. 편집위원은 논문재심사의뢰서, 논문심사점검표와 논문1부를 심사위원에게 송부한다.

⑧ 편집위원은 심사가 완료되어 채택/기각 결정된 논문을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편집위원은 논문심사현황표, 논문심사점검표, 논문심사의견서, 저자의견서 등 심사관련 자료를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⑨ 편집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된 논문의 저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며, 논문편집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결과통보서, 논문작성요령, 논문게재료안내서 등을 저자에게 송부한다.

⑩ 예고된 기한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은 논문심사독촉서를 심사위원에게 보내 협조를 요청한다.

3. (논문심사 기준) 논문심사는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에 의해 실시되는데,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점검표에 명시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① <응용통계연구>에의 적합성

② 연구의 창의성

③ 연구내용 및 방법

④ 논문의 표현

⑤ 실용성 혹은 활용성

부 칙 (1999년 6월 4일)

이 운영세칙은 1999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년 5월 24일)

이 개정된 세칙은 200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한국통계학회논문집 편집위원회 운영세칙

1999. 6. 4. 제정

2001. 5. 25. 제정

2002. 5. 24. 개정

제 1 장 편집방침

1. (투고규정) 최근 발행된 응용통계연구에 있는 ‘투고규정’의 내용을 따른다.
2. (논문의 발간) 한국통계학회논문집(ISSN 1225-9500)은 연간 3회(4월, 8월, 12월)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3. (주저자의 규정) 게재된 논문의 저자가 2인이상일 경우 주저자가 제1저자의 자리에 위치하도록 편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장은 통계학 제분야에 걸쳐 우수한 연구업적을 갖는 편집위원을 25인이하로 선임하며, 편집위원 중에서 약간명의 편집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평의원회의 동의에 의해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결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의 업무)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논문 투고요령의 제정 및 게재한 사항
 - ②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
 - ③ 논문집 편집과 인쇄에 관한 사항

④ 논문 게재료에 관한 사항

4. (편집위원회의 개최) 논문집 편집과 발간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편집부위원장과 편집위원도 편집위원회의의 소집을 편집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3 장 논문의 심사

1. (논문심사 방법)

- ①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의 주관 하에 2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비밀심사(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를 받는다.
- ② 편집위원은 전공분야, 심사경험, 연구실적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한다.
- ③ 투고된 논문은 심사기준에 따라 게재와 탈락으로 판정한다.
- ④ 편집위원의 판단에 따라, 논문심사 전 과정에 걸쳐 논문의 저자를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논문심사 절차)

- ① 저자는 논문원고 3부를 편집위원장에게 투고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확인서를 저자에게 송부한다.
- ②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즉시 논문접수일자를 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이와 동시에 분야별 편집위원에게 2인의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현황표를 기록유지하며, 논문심사의뢰서, 논문심사의견서, 논문1부를 심사위원에게 송부한다.
- ④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결과를 논문심사의견서에 기록하여 referee report와 함께 편집위원에게 보고한다.
- ⑤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즉시 우송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정/보완 요구된 논문은 저자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한다. 이때 논문 수정의뢰서와 referee report를 저자에게 송부한다.
- ⑥ 저자는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논문3부와 저자의견서를 편집위원에게 송부한다.

- ⑦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논문재심사를 의뢰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재심사의뢰서, referee report와 논문 1부를 심사위원에게 송부한다.
- ⑧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 해야한다.
- ⑨ 편집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된 논문의 저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며, 논문편집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결과통보서를 저자에게 송부한다.
- ⑩ 예고된 기한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독촉서를 심사위원에게 보내 협조를 요청한다.

3. (논문심사 기준) 논문심사는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에 의해 실시되는데,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의견서에 명시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 ① 편집기술상의 요건 적합여부
- ② 논문내용의 독창성 및 창의성
- ③ 연구주제의 중요도 (이론적, 응용적 및 교육적 기여도)
- ④ 연구 방법의 타당성
- ⑤ 논문내용의 효과적인 표현정도

부 칙 (1999년 6월 4일)

이 운영세칙은 1999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년 5월 24일)

이 개정된 세칙은 200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한국통계학회 2003년 임원진 주소 및 연락처

직책	성명	소속	주소	전화	fax	e-mail
회 장	김우철	서울대 통계학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02-880-6572	02-883-6144	wckim@stats.snu.ac.kr
부회장	강이중	동의대 수학교육 타통계학부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	051-890-1274	051-890-1585	ijkang@hyomin.donggeui.ac.kr
	심정숙	전남대 통계학과	광주시 북구 용봉동 300	062-530-3441	062-530-3449	jwsim@chonnam.ac.kr
	염준근	동국대 통계학과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02-2260-3220	02-2267-0996	joonkeun@dongguk.edu
감 사	이석훈	충남대 통계학과	대전시 유성구 궁동 220번지	042-821-5438	042-822-0260	shlee@stat.chungnam.ac.kr
	최진갑	경북대 통계학과	대구시 북구 산격동 1370	053-950-5367	053-950-5363	choijk@kyungpook.ac.kr
총무이사	임용빈	이화여대 통계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031-670-3057	031-675-1381	ybkim@nim.ewha.ac.kr
사업이사	김영일	중앙대 정보시스템학과	경기 안성군 대덕면 내리 산40-1	02-3277-2302	02-3277-3607	yik01@cau.ac.kr
학술이사	김철중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02-2123-2543	02-2123-2535	cekim@yonsei.ac.kr
편집이사	박병욱	서울대 통계학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02-880-6576	02-883-6144	bupark@stats.snu.ac.kr
	이성호	대구대 통계학과	경북 경산군 진량면 내리리 23	053-850-6424	053-850-6429	shlee1@biho.taegu.ac.kr
	이우리	경기대 응용통계학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의동 산96-6	031-249-9419	031-252-0918	wrlee@kyonggi.ac.kr
평이사	김해중	동국대 통계학과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02-2260-3221	02-2267-0998	kim3hj@dongguk.edu
	손중권	경북대 통계학과	대구시 북구 산격동 1370	053-950-5368	053-950-5363	jsohn@kyungpook.ac.kr
	안윤기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02-2123-2539	02-2123-2535	ahnyk503@yonsei.ac.kr
	전중우	서울대 통계학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02-880-6574	02-883-6144	jwjeon@plaza.snu.ac.kr
	허명희	고려대 통계학과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1	02-3290-2235	02-924-9895	stat420@mail.korea.ac.kr
	양해진 장지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308호	02-567-2859	02-564-7285	office@kss.or.kr

□ 한국통계학회 산하 연구회

◎ 공식통계연구회

직책	성명	소속	전화번호	e-mail
회장	조신섭	서울대 통계학과	02-880-6578	sinsup@snu.ac.kr
부회장	이석훈	충남대 통계학과	042-821-5438	shlee@stat.chungnam.ac.kr
총무	최종후	고려대 정보통계학과	041-860-1556	jchoi@tiger.korea.ac.kr

◎ 공업통계연구회

산업현장에서 응용되는 통계적 방법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하여, 실제 산업현장에서 도출되는 통계적 문제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이론과 실제의 feedback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회는 1991년 발족되어, 한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 관리 및 경영 그리고 R&D에 응용되는 통계적 방법론의 소개와 보급 그리고 이의 응용을 위해 매년 1~2회의 Workshop을 개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0회의 Workshop을 개최하였다. 또한 계량 방법론의 활용이 사회 전 분야로 확장되어가고 있는 만큼 금융 서비스업 부분을 포함한 사무 부문으로 관심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공업통계 Workshop은 다음과 같은 기준 하에서 주제를 선정해 왔으며, 역대 Workshop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실무활용 workshop

- 실무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기존 통계방법론의 정리/연구
- 실무에 저변 확대가 가능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통계 방법론의 연구 및 구현 방법의 소개
- 교육 및 활용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존 방법론의 정리 및 요약

2. 이론전개 workshop

- 핵심 영역별 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연구
- 기존 방법론의 현장 적용 사례 소개
- 공업 통계의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소개

직책	성명	소속	전화번호	e-mail
회장	안병진	건국대 응용통계학과	02-450-3657	bjahn@kkucc.konkuk.ac.kr
총무	고승곤	경원대 응용통계학과	031-750-5371	sgk@mail.kyungwon.ac.kr

◎ 베이지안통계연구회

직책	성명	소속	전화번호	e-mail
회장	김병휘	한양대 수학과	02-2290-0904	bkim@hanyang.ac.kr
간사	정윤직	부산대 통계학과	051-510-2288	yschung@hyowon.pusan.ac.kr

◎ 생물통계연구회

직책	성명	소속	전화번호	e-mail
회장	정형기	서경대 수리정보통계학부	02-940-7297	hgjung@seokyeong.ac.kr
간사	김동욱	성균관대 통계학과	02-760-0469	dkim@skku.ac.kr
	이재원	고려대 통계학과	02-3290-2237	jael@korea.ac.kr
	김 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02-740-8874	hokim@snu.ac.kr

◎ 조사통계연구회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한국통계학회 산하의 연구회로 조사통계와 관련 되는 분야에 관계하는 학자, 실무자 및 기관 및 각종 단체들이 모여 1988년 발족한 공동연구단체이다.

본 연구회는 통계조사 이론의 연구 및 교육, 조사기법의 개발, 통계연구 영역의 수행, 각종 자료들의 교환 및 통계조사 수행기관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 통계조사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연구논문집의 발간, 학술발표회, 관련 전문서적의 발간, 학술영역의 수행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통계학자, 통계생산관련 실무자, 관련 공무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활발하게 교류함으로써 조사이론을 실무에 효율적이면서도 올바르게 적용하도록 돕고 있으며, 그로 인해 통계조사 결과 생산되는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직책	성명	소속	전화	이메일
회장	이해용	성신여대 통계학과	02-920-7182	hylee@cc.sungshin.ac.kr
부회장	김연형 김영원	전주대 숙명여대 통계학과	02-710-9434	ywkim@sookmyung.ac.kr
총무	한근식	한신대 컴퓨터정보통신학부	031-370-6775	gshan@hucc.hanshin.ac.kr
	홍기학	동신대 컴퓨터학과	061-330-3353	khong@blue.dongshinu.ac.kr
간사	이기성	우석대 전산정보학부	063-290-1522	gisung@woosuk.ac.kr
	변종석	한신대 정보통계학과	031-370-6771	jsbyun@huc.hanshin.ac.kr

홈페이지 : <http://www1.suwon.ac.kr/~survey/>

◎ 통계계산연구회

직책	성명	소속	전화번호	e-mail
회장	김철웅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02-2123-2543	cekim@yonsei.ac.kr
부회장	이승천	한신대 통계학과	031-370-6769	seung@hanshin.ac.kr
총무	박헌진	인하대 통계학과	032-860-7647	hjpark@anova.inha.ac.kr

홈페이지 : <http://jupiter.hallym.ac.kr/kss/>

◎ 통계교육상담연구회

직책	성명	소속	전화번호	e-mail
회장	안철환	세종대 응용수학과	02-3408-3164	chahn@sejong.ac.kr
총무	최용석	부산대 통계학과	051-510-2293	yschoi@pusan.ac.kr

홈페이지 : <http://stat.anyang.ac.kr/sec>

□ 한국통계학회 산하 지회

◎ 강원 · 경기 · 인천지회

직 책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회장	전홍석	인하대 통계학과	032-860-7643	hsjorn@anova.inha.ac.k
간사	박진우	수원대 통계정보학과	031-220-2123	jwpark@suwon.ac.kr

◎ 대구 · 경북지회

직 책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회장	강석복	영남대 수확통계학부	053-810-2323	sbkang@yu.ac.kr
총무	김종태	대구대 통계학과	053-850-642	jtkim@daegu.ac.kr

◎ 부산 · 경남지회

직 책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회장	최국렬	인제대 데이터정보학과	055-320-3274	choi@stat.inje.ac.k
부회장	김규곤	동의대 컴퓨터통계학과	051-890-148	kkkim@dongeui.ac.kr
간사	김병수	인제대 데이터정보학과	055-320-3300	kbs@sta.inje.ac.kr

홈페이지 : <http://www.stat.pufs.ac.kr/~stat/>

◎ 충청지회

직책	성명	소속	전화번호	e-mail
회장	박석윤	충남대 통계학과	042-821-5434	sypark@hanbat.cnu.ac.kr
부회장	박효일	청주대 응용통계학과	043-229-820	hipark@chongju.ac.kr
	이강철	목원대 정보통계학과	042-829-7772	kangchul@mokwon.ac.kr
간사	김종우	충남대 통계학과	042-821-5432	jwkim@stat.cnu.ac.kr

◎ 호남·제주지회

직책	성명	소속	전화번호	e-mail
회장	김익찬	제주대 전산통계학과	064-754-3591	ickim@cheju.cheju.ac.kr
부회장	최병철	전북대 수학,통계정보과학부	063-270-3385	jbcbc@stat.chonbuk.ac.kr
감사	최경호	전주대 정보기술학부	063-220-2549	ckh414@jeonju.ac.kr
	조완현	전남대 통계학과	062-520-7173	whcho@chonnam.chonnam.ac.kr
총무	홍기학	동신대 컴퓨터학과	062-330-3353	khhong@blue.dongshinu.ac.kr

◎ 북미주지회

직책	성명	소속	전화번호	e-mail
회장	안성극	Washington State Univ.	1-509-225-6819	ahn@wsu.edu

□ 한국통계학회 입회안내

1. 본 학회에서는 세 종류의 학술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응용통계연구, 한국통계학회논문집) 연 9회, 학회소식지 연 6회, 학술논문발표회 proceedings, 통계용어집 등을 발간하여, 가입 회원들에게 위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학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통계 관련 정보를 회원단체에게 수시로 제공하고 있으며, 춘계 및 추계 학술논문발표회 개최를 통한 통계인의 모임과 통계의 이론 개발과 보급·응용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회 산하 7개 연구회와 6개 지회를 통하여 워크숍과 발표회등을 가져서 관심있는 분들 간의 정보 교류에도 공헌하고 있습니다.
2. 회원명부를 발간하여 통계인들간의 상호연락 및 정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3. 본 학회에 가입을 원하시면 첨부된 입회원서와 입회비 및 연회비를 본 학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기관회원, 학과회원은 off-line 입회신청을 받사오니, **입회원서양식을 다운받아 학과사무실로 팩스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 납부 안내

입회비	2만원정 (₩ 20,000)
연회비	정 회 원 4만원정 (₩ 40,000)
	학생회원 2만원정 (₩ 20,000)
	학과회원 12만원정 (₩ 120,000)
	도서관회원 15만원정 (₩ 150,000)
	기관회원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함.
종신회비	50만원정 (₩ 500,000) <정회원만 해당함>

▷납부방법 : 학회지로용지(지로번호 : 7601350) 또는 은행의 지로용지를 이용하여 금액, 회원 명, 기관명 및 납입내역을 적어서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명 및 기관명을 적지 않은 경우 미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일 회 원 서

성명	한글	영문		한자	
주민등록번호					
직장	주소	(우편번호)			
	직장 및 부서			직위	
	전화 번호		FAX 번호		E-mail
자택	주소	(우편번호)			전화 번호
우편주소	직장	자택 기 타 ()			
학력	연 도	학 고	학 과		학 위
					(학사)
					(석사)
					(박사)
경력	연 도	경 력			
전공분야 (2쪽이용)		(12)	(13)	(14)	(15)
관심분야 (3개이내)					
취미 (3개이내)					

본인은 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정, 학생)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 111 112

성명 (인)

사 단

한국통계학회장 귀하

이후

입회원서는 학회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35-70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본관308호

☎ 02) 567-2859, 02) 3453-7362 FAX 02) 564-7285

E-mail : office@kss.or.kr

☞ 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가입이 가능하며, 입회원서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구분의 세목

(12) 주 통계활동의 구분(하나씩만)

- | | |
|--------------|--------------------|
| A. 교육 | E. 전문적 자원 |
| B. 연구 | F. 학생 |
| C. 자료수집 및 분석 | G. 행정 및 경영 |
| D. 저술활동 | H. 기타(입회원서에 기입 요망) |

(13) 응용대상분야 구분(3개이내)

- | | |
|-------------------|-------------------|
| a. 경제 및 경제이론 | n. 신문 및 방송분야 |
| b. 교육 및 교육행정 | o. 심리학 |
| c. 교통문제 | p. 에너지문제 |
| d. 기업경영문제 | q. 엔지니어링분야 |
| e. 농수산 분야 | r. 은행 및 재무관계 |
| f. 마케팅 및 광고분야 | s. 인구학 |
| g. 물리학 및 물리적 응용분야 | t. 제조업 관련문제 |
| h. 법률분야 | u. 지구과학분야 |
| i. 보건위생 및 보건행정분야 | v. 컴퓨터 및 정보과학 |
| j. 보험분야 | w. 통신문제 |
| k. 사회학 분야 | x. 화학 및 화공학 분야 |
| l. 생물 및 의학 | y. 행정 및 정치분야 |
| m. 수리통계학 및 수학 | *. 기타(입회원서에 기입요망) |

(14) 방법론적 기법구분(3개이내)

- | | |
|-------------------|----------------------|
| 1. 가설검정 및 추정 | 10. 회귀분석, 선형모형 |
| 2. 그래픽스(Graphics) | 11. 전산통계 및 컴퓨터 |
| 3. 다변량 해석 | 12. 통계행정 및 실무 |
| 4. 비모수적 방법 | 13. 확률론 |
| 5. 표본설계 및 조사 | 14. 통계적 품질관리 |
| 6. 실험계획법 | 15. 생물, 의학, 보건, 인구통계 |
| 7. 시계열분석 및 예측 | 16. 계량경제, 경영통계 |
| 8. 신뢰도 | 17. 기타(입회원서에 기입요망) |
| 9. OR | |

(15) 주된 근무직장별 구분(2개이내)

- | | |
|--------------------|-------------------|
| 가. 개인 자문회사 또는 개인사업 | 마. 정년퇴임 |
| 나. 교육기관(학생제외) | 바. 정부행정기관 |
| 다. 기업 및 산업체 | 사. 학생 |
| 라. 비영리 연구기관 | 아. 기타(입회원서에 기입요망) |

회비는 학회지로용지(지로번호 : 7601350) 또는 은행의 지로용지를 이용하여 금액, 회원성명, 납입내역을 적어서 은행에 내시면 됩니다.

- 입 회 비 : 20,000원
- 연 회 비 : 정회원 40,000원 학생회원 20,000원
- 종신회비 : 500,000원

입회원서와 입회비와 연회비가 접수되어야 회원으로 등록되십니다.

□ 학회지(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JKSS(Journal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 1973년 통계학연구로 창간
- 1996년 영문명칭(JKSS)으로 변경
- 년 4회 발간(3. 6, 9, 12월), 통권 (2003년) 32권
- 영문지
-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선정(2002. 8. 20.)

◎ 응용통계연구(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 1987년 창간
- 년 2회 발간(3, 9월), 통권 (2003년) 16권
- 국문지
- 사례연구논문, 일반연구논문, 연구교신으로 분류
-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선정(2002. 12. 31.)

◎ 한국통계학회논문집(The Korean Communication in Statistics)

- 1994년 창간
- 년 3회 발간(4, 8, 12월), 통권 (2003년) 10권
- 국영문혼용지
-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선정(2002. 12. 31.)

한국인구학회

□ 일반현황

- 영문명칭 :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 주소 :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산7번지 한국교원대학교 인문관 320호
우 363-791
- 전 화 : 043-233-3612 (fax 공용)
e-mail : kopopa@hotmail.com, serong2@naver.com
- 홈페이지 : society.kordic.re.kr/~pak
- 창 립 일 : 1976 (법인등록 : '95.12. 9.)
- 법인성격 : 사단법인
- 주요기능 : 인구학 및 인구통계 연구, 인구학술지의 간행
- 예 산 : 11,419만원(2002년)
- 인력(상근) : 없음(총무이사 및 조교가 업무수행)
- 회원수
 - 정 회 원 : 398
 - 기관회원 : 59

□ 설립목적

1976년 인구학 및 인구통계의 발전과 이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 및 연구조성을 목적으로 설립

□ 주요사업

1. 연 2회의 춘·추계 학술논문발표회의 개최
2. 학술지의 간행 - 학술논문집 「한국인구학」을 연 2회 발간
3.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공동 학술회의 개최
4. 회원들간의 정보교류를 위한 학회소식지 연 4회 발간

한국인구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비영리 단체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구학 및 인구통계의 발전과 이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 및 연구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인구학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3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 대학 또는 인구기관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인구연구 발표회의 개최
2. 인구학술지의 간행
3. 국내 인구통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토의 및 건의
4. 인구학의 이론 개발 및 보급, 응용을 위한 제반 학술활동 주관
5. 위의 목적에 일치하는 기타 사업

제5조 (기구)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다만, 상설위원회와 연구회 및 지회에 관한 규정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1. 사무국
2. 각종 위원회
3. 지 회

제6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 본회가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공여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7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1. 개인회원 : 인구와 관련된 연구, 교육 및 정책분야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인구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는 자 및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은 누구나 개인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2. 기관회원 : 인구학과 인구통계에 관련된 학교와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기관 및 단체로 이사회에서 그 가입을 결정한다.

제8조 (입회와 퇴회)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퇴회를 원하는 자는 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의 임무와 권리) 각급 회원은 운영세칙이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회합에 참석하고 학회지, 학보를 받을 수 있다.
2. 개인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 각종 인구학회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 (제명) 3년이상 회비를 제납한 회원은 회장이 평의원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5인이하로 한다.
4. 감사 2명

제12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각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다만, 결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한다.

2.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3. 이사의 임기는 4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4. 감사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회장, 부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칙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제1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때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사항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평의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16조 (기구의 구성)

1. 제5조제1호의 기구인 사무국에는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원을 둘 수 있다.
2. 제5조제2호의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주요의결사항

제18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다음에 따른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사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가. 이사회에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 나. 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다.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19조 (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다음에 따른다.

1. 총회는 재적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0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신상에 관계되는 사항 중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21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
3. 정관 및 내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
5. 기타 중요사항의 심의와 의결

제22조 (의결 정족수) 이사회 의결정족수는 다음에 따른다.

1.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이사회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차기회장은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3조 (이사회 소집) 이사회 소집은 다음에 따른다.

1.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다음에 해당될 때에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나.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일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제 6 장 운영위원회

제25조 (운영위원회 설치)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6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며 집행한다.

제2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선출 및 임기)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2.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 차기회장은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운영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제정 및 회계

제29조 (제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또는 장려금
3. 국내, 외 관련기관의 지원금
4.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5.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6. 찬조금 및 기타 수입

제3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 (세입세출 예산)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32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33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35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 개정은 총회에서 행하며,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국인구학회 2003년 임원진 주소 및 연락처

직위	성명	주소	주택, 이동전화	사무실	e-mail
회장	김태현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산7 한국고원대 일반사회교육학과	02-352-9181	043-230-3204 fax:232-7175	thkim@cc.knue.ac.kr
부회장	변용찬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19-204-2860	02-385-7364	byc@kihasa.re.kr
	김두섭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02-446-7029 019-369-7029	02-2290-0846 fax:2281-4554	duskim@hanyang.ac.kr
이사	구성열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신상대 414호	017-202-2474	02-2123-2474 393-1562	sykoo@yonsei.ac.kr
	권오솔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통계청 인구조사과장		042-481-2233	oskwon@nso.go.kr
	권태환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02-873-7841 fax:889-0193	02-880-6404 8504	thkwon@proms.snu.ac.kr
	김민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통계청 통계정보국장		042-481-2130	mkkim@nso.go.kr
	김원년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서창동 208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011-9080-2151	041-860-1512 fax:865-9079	KWN@tiger.korea.ac.kr
	민경희	충북 청주시 개신동 산48,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043-261-2180	Kyonghee@cbucc.chungbuk.ac.kr
	박상태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1,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031-913-9581	02-705-8367 fax:718-4353	lspark@ccs.sogang.ac.kr
	송위섭	경기도 수원시 원천동 산5,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031-219-2783	wssong@madang.ajou.ac.kr
	안계춘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031-903-2585	02-2123-2422 fax:361-2420	Kcahn@yonsei.ac.kr
	이규식	강원도 원주군 홍업면 애지리,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033-760-2414	kslee@dragon.yonsei.ac.kr
	이흥택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270, 한국외대 사회과학대학	031-795-9159	02-961-4883	htlee@maincc.hufs.ac.kr
	최 순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 1,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051-262-7013	051-240-2741	schoi@damnet.donga.ac.kr
	최진호	경기도 수원시 원천동 산5,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031-711-5222	031-219-2778	jhchoi@madang.ajou.ac.kr
	한성현	충남 아산군 신창읍 읍내리, 순천향대학교 융융과학부		041-530-1267	hshooo@sch.ac.kr
감사	윤형백	통계청 서울사무소장		02-3443-5381	yhb@nso.go.kr
	전광희	대전시 유성구 궁동 220,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042-821-6339	jkh96@hanbat.chungnam.ac.kr

□ 한국인구학회 입회안내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성명		휴대전화		e-mail	
소속	직장명				
	주소	(-)			
	Tel.		Fax.		
자택	주소	(-)			
	Tel.				

위 본인은 사단법인 한국인구학회 정관 제7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및 제8조(입회와 퇴회)의 규정에 의해 사단법인 한국인구학회의 개인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03년 월 일

신청인 _____(인)

사단법인 한국인구학회

추신 - 개인회원 및 회비구분

1. 정회원 : 전임강사 이상 정규직에 종사하고 계신 회원-연회비 3만원
2. 준회원 : 학위를 마쳤으며 정규직에 계시지 않는 회원-2만원
3. 학생회원 : 1만원

#학회계좌번호

■ 농협 (한국교원대학교지점) 306-01-054294

■ 예금주 : 김태현 (한국인구학회)

□ 학회지

◎ 한국인구학(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 1977년 한국인구학회지로 창간
- 1996년 한국인구학으로 변경
- 년 2회 발간(6, 12월), 통권 (2003년) 26권
- 국문지
-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선정(2001년 하반기)

□ 《한국인구학》 원고제출요강, 심사절차 및 원고작성 지침

◎ 원고제출요강

1. 《한국인구학》에 발표하는 논문은 독창성을 지닌 것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2. 《한국인구학》에 게재하기를 희망하는 논문이나 글은 《한국인구학》의 편집위원장에게 다음의 주소로 우송 또는 전송해야 한다.

(339-700)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서창리 208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김원년 교수, E-mail : KWN@tiger.korea.ac.kr

Tel : 041-860-1512 / Fax : 041-865-9079

3.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쓰여진 것으로 아래의 원고작성 지침에 따라야 한다.
4. 원고를 우송할 경우에는 4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원고를 email로 전송할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3부를 작성하여 우송한다. 논문이 심사절차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면 심사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수정한 후 원고와 원고를 담은 디스켓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원고 심사기준 및 절차

1. 학회지에 수록할 논문 선정을 포함한 학회지 발간에 필요한 모든 업무는 편집위원회가 전담한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제출된 원고는 논문주제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논문 1편당 심사위원 3명이 익명으로 심사한다.
3. 심사위원은 별도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하며, 심사위원이 수정을 요청할 경우, 원고 제출자는 이에 응하거나 서면으로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야 한다. 심사결과 "부적격" 또는 "수정보완"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 원고작성 지침

1. 연구논문을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백색 A4용지에 단면으로 출력해서 제출해야 한다. 글자크기는 10, 여백은 용지 상하좌우 끝에서 3센티미터(약 10글자 정도)를 두며 한 페이지당 총 35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원고의 분량은 각주, 참고문헌, 도표 등을 포함하여 25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연구단편(research notes)은 15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원고는 논문제목, 국문 또는 영문요약, 본문, 참고문헌, 표, 그림 및 영문 또는 국문요약의 순서로 나누어 작성한다. 각 요약문 말미에 자료검색(data search)에 필요한 다섯 개 내외의 중요어(key word)를 아래의 예와 같이 표기한다.

예 : 혼인력(nuptiality), 가족(family), 노령화(aging), 국내인구이동
(internal migration)

5. 국문원고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만 한자를 괄호 속에 함께 쓰도록 하며, 기타 외래어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원문에 괄호하여 부기한다.
6.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의 제목과 필자의 이름을 수록해야 하며, 필자가 두 사람 이상일 경우에는 옆으로 나란히 기재한다. 감사의 글이나 연구지원기관 등은 * 표를 하여 같은 면에 각주로 기재한다.
7. 국문요약(연구단편 포함)은 500-600자로 작성하며, 영문요약은 100-150단어로 작성하여 본문과 별도로 원고에 첨부한다.
8. 본문에는 논문제목을 본문의 첫 장에 기재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논문심사위원이 필자를 알 수 있게 하는 서술은 삼가야 한다. 세부적 논문서술요령은 다음과 같다.
 - 1) 본문은 내용구성을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3단계 정도의 소제목을 추천한다. 소제목은 I, 1., 1), (1) 형식으로 단계적으로 구성한다.
 - 2) 저술인용방식은 저자의 이름과 저서의 출판년도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인용페이지를 기재한다. 같은 저술을 되풀이 인용할 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 구체적인 것은 아래의 예에 따른다.
 - (1) 저자의 이름을 ① 본문에 언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출판년도를 괄호 안에 제시하고, ② 본문에 언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름과 출판년도를 모두 괄호 안에 제시한다 : ① 이흥탁(1987: 112), Cherlin(1999) ② (이흥탁, 1987), (Cherlin, 1999)
 - (2) 국문 원고에서 저자의 이름이 외래어인 경우 한글로 쓰고 원명은 괄호 속에 담는다: 셸린(Cherlin, 1999).

- (3) 2인 공동저술인 경우 두 사람의 이름을 모두 제시한다: 권태환 · 김두섭(1990: 69), (권태환 · 김두섭, 1990: 69).
- (4) 3인이상의 공동저술인 경우 ① 첫 번째 인용에서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제시하고 ② 그 이후부터는 '외'를 사용한다: ① 권태환 · 김태현 · 최진호(1995), (권태환 · 김태현 · 최진호, 1995) ② 권태환 외(1995), (권태환 외, 1995).
- (5) 개인이 아닌 단체나 기관의 저술일 때는 최소한의 저자표기를 사용한다: 통계청(1997)
- (6) 두 개 이상의 다른 저술을 인용할 때는 연도순으로 세미콜론 ';'을 사용하여 저술을 구분한다: (구성열 · 강병규, 1998; 홍문식, 1998; 박경애, 1999)
- (7) 출판예정인 저술을 인용할 때는 '출판예정'이라고 기재해야 하며, 미간행물일 경우에는 '미간행'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Park, 1998, 미간행)
- 3) 본문과 관련은 있지만 본문에 포함할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 것으로서 언급이 필요한 경우나 재인용하는 경우 원래의 저서를 밝힐 필요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언급한 본문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9.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한국어문헌은 저자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외래어문헌을 알파벳순으로 제시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 표기를 한다. 참고문헌작성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에 제시하였다.
- 1) 같은 저자의 저술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연도가 이른 순서대로 나열한다.

2) 출판예정 저술을 제시할 때는 출판연도 대신 '출판예정'이라고 기재하고 출판할 예정인 학술지나 책의 이름을 명기한다. 학위논문이나 미간행 저술은 발표한 장소와 날짜를 기재한다.

3) 같은 저자의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판된 것이 두 편 이상일 때는 본문에서 인용한 순서대로 출판연도에 영문자 a, b, c 등을 부기하여 구분하고 차례로 나열한다.

4) 저자가 2인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다음의 예는 위에 기술한 참고문헌 작성원칙을 따른 것이다.

권태환 · 김두섭 (1990), 《인구의 이해》, 서울대 출판부.

김태현 (1996), "농촌인구의 특성과 그 변화, 1960~1995," 《한국인구학》 19(2), 77-105.

_____ (1997), "인구총조사의 방법과 평가," 《한국인구학》 20(1), 27-46.

최진호 (1995), "지역간 인구분포," 권태환 · 김태현 · 최진호 편, 《한국의 인구와 가족》, 일신사, 127-235.

Cherlin, Andrew J. (1999), "Going to Extremes: Family Structure, Children's Well-being, and Social Science," *Demography* 36(4), 421-428.

Park, Keong-Suk (1998), "Geographic Proximity between Elderly Parents and their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Convergence of Individualism and Familis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ology, Brown University.

Smith, David R. (1992), *Formal Demography*, New York: Plenum.

10. 표와 그림은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1) 주는 표 또는 그림 아랫부분에 '주:'라고 쓴 다음 차례로 제시한다.

2) 출처는 '자료:'라고 쓴 다음 위의 항목 8의 요강에 따라 제시한다.

- 3) 본문에 표와 그림이 들어갈 자리를 명시한다.
 - 4) 통계적 유의도는 * $p<.05$, ** $p<.01$, *** $p<.001$ 과 같이 표기한다.
11.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본 학회에서 발간된 최근 《한국연구학》의 관례에 따른다.

한국조사연구학회

□ 일반현황

- 영문명칭 : The Korean Association for Survey Research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08번지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우 110-054
- 전 화 : 02-3702-2100 (이계오), fAX: 02-3702-2121
e-mail : admin@kasr.org
- 홈페이지 : <http://www.kasr.org>
webmaster : 신미선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 창립일 : 1999.11.13.(법인등록 : 2000. 1. 7.)
- 법인성격 : 사단법인
- 예 산 : 14,016만원(2002년)
- 인력(상근) : 없음(총무이사 및 조교가 업무수행)
- 회원
 - 정 회 원 : 272명
 - 학생회원 : 16명
 - 기관회원 : 20개

□ 설립목적

조사연구와 관련이 있는 학계 및 실무 분야 전문가들이 조사연구를 활용하고 연구하는 학문간 및 이론과 실무간 연계

□ 주요사업

1. 연 2회의 춘·추계 학술논문발표회의 개최
2. 『조사연구』지의 간행
3. 외국 조사연구학회와의 교류 및 공동 학술회의 개최
4. 회원들간의 정보교류를 위한 학회소식지 연 6회 발간
5. 조사연구의 이론개발 및 보급/응용을 위한 제반 학술활동(학술세미나, 워크숍 등)

한국조사연구학회 정관

제정 1999. 11. 13.

개정 2002. 12. 30.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조사연구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Survey Research: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조사연구에 관한 학문연구와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사연구 발표회 개최
2. 조사연구학술지의 간행
3. 국내 조사연구의 개선에 관한 연구토의 및 건의
4. 조사연구의 이론개발 및 보급, 응용을 위한 제반 학술활동 주관
5. 외국 조사연구학회와의 교류 및 공동학술회의 개최

제4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 대학 또는 관련기관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조사연구와 관련된 분야의 강의 및 연구와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정회원 3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심의를 거쳐 가입한다.
2. 준회원은 조사연구와 관련된 분야의 대학원생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

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회원 1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회의 심의를 거쳐 가입한다.

3. 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4.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단체, 기관으로서, 이사회에서 그 가입을 결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연구발표회에 참석, 발표할 수 있으며, 본회가 발간하는 회지를 받고 또 이에 투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정회원만이 가진다.
②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상실) ①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이사회회의 심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이를 차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② 3년이상(해외 체류기간 제외) 계속하여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회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제 3 장 임원 및 조직

제8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2명
3. 이 사 : 20명이상 30인이하로 하되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둘 수 있다.
4. 운영위원: 10명이내로 하되 다음의 각목의 업무를 담당한다.
 - 가. 총 무
 - 나. 연 구
 - 다. 편 집
 - 라. 섭 외
 - 마. 기타 회장이 지정하는 업무
5. 감 사 : 2명

제9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각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여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다만, 결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①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선거에는 정회원만이 참여할 수 있다.
- ②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④ 이사 및 운영위원은 회장 및 2인의 부회장으로 구성되는 회장단의 협의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④ 운영위원은 회장단을 보좌하고 회장단이 지정하는 본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 ⑤ 감사는 본회의 운영 및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연 1회 이상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기 구

제11조 (기구의 종류)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운영위원회
4. 편집위원회
5. 각 특별위원회

제12조 (총회)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장이 그 의장이 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정관의 개정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주요 안건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단, 구성원 3분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이를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회칙 및 내규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기타 주요 사항

③ 의사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되어 필요시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본회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2. 총회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기타 주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④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⑤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각 특별위원회) ① 본회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 5 장 재 정 및 회 계

제17조 (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입회비 및 정기회비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학회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 (사업계획등의 제출) ① 회장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익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감독관청에 제출하고 매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② 회장은 사업실적과 결산에 대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관청에 지체없이 제출한다.

제 6 장 보 칙

제20조 (정관의 변경)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행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을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학술 단체에 기증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하되, 명시되지 않은 세칙은 이사회 의 의결을 얻어 회장이 정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사)한국조사연구학회 조사윤리강령

사단법인 한국조사연구학회는 사회조사(이하 “조사”로 약칭)의 과학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사윤리강령을 제정한다. 본 강령은 조사자의 윤리적 의무를 규정하고, 조사연구의 윤리적 요소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자는 조사과제 수행에서, 그리고 조사의뢰자 및 일반인과의 관계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정직성을 유지한다. 또한 조사자는 본 강령에 명시된 원칙에 어긋나는 일체의 작업이나 조사과제를 거부한다.

조사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원칙

제1조. 조사자는 조사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단계를 밟으면서 자료수집과 처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제2조. 조사자는 연구설계와 자료분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1. 조사자는 연구과제에 적합한 조사기법과 분석방법을 사용한다.
2. 조사자는 조사결과를 왜곡하는 조사기법과 분석방법을 선택하지 않는다.
3. 조사자는 자료에 어긋나게 조사결과를 해석하지 않으며, 그러한 해석을 묵인하지 않는다.

조사결과 발표시 준수하여야 할 원칙

제3조. 조사자는 조사결과를 조사의뢰자에게 보고하거나 일반인에게 공표할 때 다음 사항을 밝힌다.

1. 조사자
2. 조사의뢰자
3. 조사목적
4. 조사시기
5. 조사장소
6. 모집단과 표집틀
7. 표본크기 및 산정방법

8. 표집방법
9. 조사방법(면접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등)
10. 질문지(질문내용)
11. 재통화 · 재방문 · 재발송 횟수
12. 표본대체 규칙
13. 응답률
14. 표집오차
15. 가중치 부여 방식
16. 기타 조사 및 분석 절차에 관한 사항

제4조. 조사자는 조사결과가 일반인에게 잘못 해석되어 전달될 때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조사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제5조. 조사의뢰자에 대한 책임

1. 조사자는 조사의뢰자의 사업정보 및 조사결과에 관한 정보를 비밀로 한다. 단, 조사의뢰자가 그 정보의 배포를 명시적으로 승인하였을 경우, 또는 본 강령의 제7조에 의하여 배포가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조사자는 조사기법 · 인력 · 장비 등의 한계 내에서 완수할 수 있는 조사과제만 수용한다.

제6조. 조사대상자에 대한 책임

1. 조사자는 조사대상자에게 응답을 강요하지 않고, 그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그들을 모욕하여 수치심을 유발하는 조사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조사자는 조사대상자의 익명성을 보호한다. 단, 조사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이나 추가적인 분석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조사자는 조사대상자가 자유의사로 조사를 거절하거나 도중에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한다.

회원 조사자의 의무

제7조. 회원 조사자는 본 학회의 조사윤리위원회가 본 강령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조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론조사 보도지침

-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

언론인과 여론조사자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가장 흔히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질문이다. 여기 제시하는 것은 언론인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기 전에 여론조사자에게 물어 보아야 할 20가지 질문이다. 이것은 여론조사 실시방법에 관한 입문서가 아니라, 현역 언론인들이 여론조사 보도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언론은 "과학적인" 여론조사만을 보도해야 한다. 여기 제시된 많은 질문들은 어떤 여론조사가 보도할 가치가 있는 과학적 조사인지 아니면 가치가 없는 비과학적 조사인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비과학적인 사이비 조사가 많은데 이런 조사는 간혹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전혀 의미가 없다. 말하자면 수신자부담 전화를 이용해 참여하는 전화조사, 거리에서 아무나 잡고 하는 조사, 대부분의 인터넷 여론조사, 쇼핑몰 여론조사 등이 그런 예이다.

과학적인 조사와 비과학적인 조사의 두드러진 차이는 누가 응답자들을 선정하는가 하는 점이다. 과학적 조사의 경우는, 여론조사자가 응답자를 규정하고 찾는다. 비과학적인 조사의 경우에는, 대체로 응답자들 스스로가 조사대상자가 되어 자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

제대로 이루어진 과학적 여론조사는 응답자들뿐만 아니라 그 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까지 알 수 있는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한다. 심지어는 전체 국민들의 의견까지도 알 수 있다. 반면에 비과학적 조사는 단순히 응답자들의 의견을 말해 줄 뿐 그 이상의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언론인들은 여기 제시된 20개 질문을 통해 올바른 여론조사보도를 위해 필요한 핵심 정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1. 누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가?
2. 누가 여론조사의 비용을 지불했으며, 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3. 조사응답자의 수는 몇 명인가?
4. 조사대상자들을 어떻게 선정했는가?
5. 조사대상자의 모집단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조사대상자를 어느 지역 혹은 어떤 집단에서 구했는가?
6. 여론조사 결과는 모든 응답자들의 대답에 근거하여 산출한 것인가?
7. 응답률은 얼마인가?
8. 언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가?
9. 어떤 조사방법을 사용했는가?
10. 인터넷이나 웹 상에서의 여론조사는 믿을만한 것인가?
11. 여론조사에서 표집오차란 무엇인가?
12. 누가 선두인가?
13. 조사 결과를 왜곡시키는 요인으로서는 또 어떤 것이 있는가?
14. 어떤 질문을 사용했는가?
15. 어떤 순서로 질문했는가?
16. 여론조사를 가장한 "푸시 폴"(Push Poll)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7. 동일한 주제에 관한 다른 조사들이 있었는가? 그 조사들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가? 다르다면, 왜 다른가?

18. 묻고자 하는 질문은 모두 물었다. 대답 또한 매우 그럴 듯 해 보인다.
그렇다면 그 조사는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
19. 잠재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를 보도해야 하는가?
20. 이 여론조사 결과는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한국조사연구학회 임원진 주소 및 연락처

직책	성명	소속	주소	전화	자택 이동전화	e-mail
회장	이게오	한국갤럽(주)	서울시 종로구 사직 동 208	02-3702-2582	043-52-0676	kayolee@orgio.net
부회장	이 건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서울시 동대문구 전 농동 90	02-2210-2649	02-2299-4492 011-705-4492	kunlee@uos.ac.kr
	박찬욱	서울대 정치학과	서울시 관악구 신림 동 산56-1	02-880-6432	011-9027-8618	chwpark@snu.ac.kr
이사	김성종	단국대 행정학과	서울시 용산구 한남 동 산 8	02-709-2967	02-451-3985	poec@dankook.ac.kr
	김순홍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광주광역시 남구 전 월동 592-1	062-670-2445	062-654-6705 011-601-5463	soonkim@hanmail.net
	김영석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신 촌동 134	02-2123-3296	02-785-0650 011-719-0266	yseok@yonsei.ac.kr
	김주영	국인대 경영학과	서울시 성북구 정릉 동 861번지	02-910-4577		jkim@kookmin.ac.kr
	김중구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경기도 의왕시 내손2 동 665-1	031-420-2297	02-555-0517 011-251-2297	jkim@keei.re.kr
	김 령				02-2611-5538 011-470-9692	
	남궁평	성균관대 통계학과	서울시 종로구 명동 동 3-53	02-760-0465	02-792-0045 011-727-0468	namkung@yurim.skku.ac.kr
	노규형	리서치앤드리서치	서울시 강남구 역삼 동 833-2 성보역삼빌	02-3484-3000	02-6241-119	nmr@randrco.kr
	노익상	한국리서치	서울시 강남구 역삼 동 831-45 나리빌딩	02-538-7766	02-543-5972 0119039-8399	isroh@hrc.co.kr
	류제복	청주대 통계학과	충북 청주시 내덕동 36	043-229-8201	043-212-7354	jbryu@chongju.ac.kr
	민경희	충북대 사회학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산48	043-261-2182		kyonghee@cbucc.chungbuk.ac.kr
	박무익	한국갤럽 대표	서울시 종로구 사직 동 208	02-3072-2100		yckim@gallup.co.kr
	성태제	이화여대 교육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대 현동 11-1	02-3277-2622	02-365-7246 017-317-2622	tjseong@ewha.ac.kr
	염준근	동국대 통계학과	서울시 중구 필동 3 가 26	02-2260-3220	02-591-1739 011-9733-1739	joonkeun@dongguk.edu
	오승석	상지대 행정학과	강원도 원주시 우산 동 660번지	033-730-0254	02-6429-1385	sothis@mail.sanggi.ac.kr
	이남영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한국사회과학대이타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여 의도동 44-3 제일상	02-710-9486	02-553-0712	nee@ksdc.re.kr
	이상경	(주)인터넷에트릭스 대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30 라인빌딩 4	02-501-8253	02-2256-0834	sklee@hri4u.com
	이석훈	충남대 통계학과	대전시 유성구 공충 220	042-821-5438	042-861-4449 016-435-4449	shlee@stat.cnu.ac.kr
	이승욱	서울대 보건대학원	서울시 종로구 연건 동 28번지	02-740-8882	02-403-2044	leeswook@snu.ac.kr
	이해윤	성신여대 통계학과	서울시 성북구 동선 동 3가	02-920-7182	031-792-7056 019-305-7755	hylee@cc.sungshin.ac.kr
	장원호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서울시 동대문구 전 농동 90	02-2210-2632	02-833-3162 019-391-0612	wjang@uoscc.uos.ac.kr

직책	성명	소속	주소	전화	자택 이동전화	e-mail
이사	조성겸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대전시 유성구 공동 220	042-821-6376	042-861-6371	skcho@cnu.ac.kr
	홍두승	서울대 사회학과 전 조사연구학회장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02-880-6414	02-588-5226 016-265-6414	dshong@snu.ac.kr
	박용치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90	02-2210-2406	02-533-6433	yongpark@uos.ac.kr
	정택환	통계청 기획국장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042-481-2030	02-443-0943 011-793-1803	taikyyoung@nso.go.kr
감사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2가 53-12	02-710-9434	02-599-4439	ywkim@sookmyung.ac.kr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02-880-6828		yeo@snu.ac.kr
총무	정광호	국민대 행정학과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88-1	02-910-4402		kwjung@mail.kookmin.ac.kr

◎ 조사윤리위원회

- 위원장 : 이남영 (숙명여대 정치학과 교수)
- 위 원 :
- 김영석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류제복 (청주대 응용통계학과 교수)
-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 양승목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이창현 (국민대 언론학부 교수)

◎ 편집위원회

- 위원장 : 조성겸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위 원 :
- 김규성 (서울시립대 전산통계학과 교수)
- 김병조 (국방대학교 교수)
-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
- 김청택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심희기 (동국대 법대 교수)
-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 학술논문상 운영위원회

- 위원장 : 홍두승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위 원 :
 - 김두섭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 김주영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 박찬욱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 이명진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 이기재 (한국방송대 정보통계학교 교수)
 - 한상린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허명희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

입 회 원 서

성명	한글		영문		한자	
직장	주소	(우편번호)				
	직장 및 부서				직위	
	전화 번호		FAX 번호		E-mail	
자택	주소				전화 번호	
학력	연도	학교		학과		학위
경력	연도	경력				
전공분야						

본인은 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종신, 정, 학생) 회원으로 가입하고
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한국조사연구회장 귀하

□ 회원의 구분

한국조사연구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분됩니다.

정회원은 조사연구와 관련된 분야의 강의 및 연구와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정회원 3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심의를 거쳐 가입합니다.

준회원은 조사연구와 관련된 분야의 대학원생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회원 1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심의를 거쳐 가입합니다.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합니다.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단체, 기관으로서, 이사회에서 가입을 결정합니다.

□ 회원의 권리와 의무

한국조사연구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가 주최하는 연구발표회에 참석, 발표할 수 있으며, 본 학회가 발간하는 회지를 받고 이에 투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의사결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회비납부 안내

2003년도 회비는 개인 정회원 3만원(준회원은 50%), 단체회원 10만원입니다. 회비납부는 국민은행 036-01-0367-113 (사단법인 한국조사연구학회)로 해주시면 됩니다.

납부 후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총무 담당 정광호(02-910-4402, kwjung@kookmin.ac.kr) 교수에게 문의 바랍니다.

□ 학회지

◎ 조사연구(Survey Research)

- 2000년 조사연구로 창간
- 년 2회 발간(6, 12월), 통권 (2003년) 4권
- 국문지
- 조사연구는 각종 조사와 통계 기법을 활용하는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실제 조사의 질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경험적 연구 혹은 이론적 연구논문 등을 게재하여 회원들에게 학술적 토론의 기회와 조사 관련 학술자료의 제공을 목표로 창간되었으며 2003년 하반기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후보지에 선정된 한국조사연구학회의 학술지입니다.

조사연구에 게재를 원하는 논문은 양식에 따라 작성한 후 편집위원장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조사연구』 논문 양식, 논문 제출 안내, 편집지침, 논문 기고 요령은 홈페이지 참고

대한통계협회

□ 일반현황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 서울세관 별관 103호
우 135-010
- 전 화 : 02-3443-7954~6, fax : 02-3443-7957
e-mail : kosa@nso.go.kr
- 홈페이지 : www.stat.or.kr, 통계쇼핑몰 : www.nso.go.kr/shopmall/
- 설 립 일 : '63. 5. 6.
- 법인성격 : 재단법인
- 예 산 : 43,269만원(2002년)
- 인력(상근) : 5명(회장·부회장 비상근)
- 회원 : 67개기관

□ 설립목적

본 협회가 설립된 1963년 당시는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이 활발하게 추진되던 시기로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경제개발계획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서는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그 실적을 분석 검토하는데 기초자료가 되는 각종통계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수요에 부응하고자 통계실무자의 지식과 기술의 향상으로 [양질통계의 적용, 저가공급]을 하도록 하고, 통계작성자와 이용자 그리고 연구자인 [통계] 상호간의 긴밀한 통계정보 교환과 친목도모를 위한 필요성이 절실하여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의 본 협회가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오늘날의 통계수요는 각 부문에 걸쳐 다양하고 세밀한 자료의 요구 등 질 양면에서 현저하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OECD 가입이후 공해, 환경, 삶의 질에 관한 통계 등 신규개발 또는 재편, 증편하여야 할 통계가 많은 이때 본 협회가 통계청의 대민간 통계정보 제공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그 기능과 함께 통계의식제고기능도 하고 있어 책무가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 연혁

- 1963. 3. 20 설립
 - 5. 6 경제기획원장관인가
 - 5. 10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등기
- 초대 회장에 이은복 선임
- 1965. 3. 제2대회장에 이은복 연임
- 1967. 3. 제3대회장에 이은복 연임
- 1967. 9. 사무국에 홍보부 사업부 조사부 설치
- 1969. 3. 제4대 회장에 이은복 연임
- 1971. 2. 제5대 회장에 이은복 연임
- 임원임기4년으로 개정
- 1971. 4. 상임사무국장 김동현 취임
- 1973. 1. 김동현사무국장 사임
- 1973. 2. 제6대회장에 변형윤 선임 이사개선
- 1977. 2. 제7대회장에 박홍래 선임 이사개선
- 1981. 2. 제8대회장에 장신규 선임 이사개선
- 제2대사무국장 정인환 취임
- 사무국 개편강화(조사연구부, 지도부, 홍보부, 총무부 설치)

- 1984. 2. 제3대사무국장 박창권 취임
- 1985. 2. 제9대회장에 장신규 연임 이사개선
- 1986. 2. 제4대사무국장 정인환 취임
- 1987. 2. 제5대사무국장 신 윤 취임
- 1989. 2. 제10대회장에 장신규 연임
임원 임기 3년으로 개정
- 1992. 2. 제11대회장에 함만준 취임개선
- 1993. 2. 사무국기구축소개편(총무 조사지도부 2부로)
- 1993. 6. ISI기관회원으로 가입
- 1995. 2. 제12대회장에 함만준 연임 이사개편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 2년으로 개정
- 1997. 2. 제13대회장에 함만준 연임
- 1998. 5. 신윤 사무국장 사임 제6대사무국장 신경근 취임
- 1999. 2. 제14대회장에 민태형, 초대부회장에 신현균 선임
- 2001. 2. 제15대회장에 민태형, 제2대부회장에 신현균 연임
- 2003. 2. 제16대회장에 민태형, 제2대부회장에 신현균 연임

□ 주요사업

(1) 통계연구기관 선진통계이론과 기법의 도입 등으로 통계발전에 관한 연구와 통계 정보 및 통계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자주적 연구(협회자체연구)와 외부로부터의 수탁연구(용역)를 하며 연구결과는 협회지인 [통계], 연구보고서, 심포지엄 또는 세미나 등을 통하여 발표

(2) 통계조사기관 풍부한 통계조사경험을 가진 통계조사기획요원의 실사계획과 고도로 훈련된 조사원을 활용, 각종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통계자료를 위탁한 이용자에 제공

(3) 통계자료은행 통계정보의 다각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대민간 통계 정보제공 대행기관으로 1995연도에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통계청이 보유하고 있는 인구, 노동, 산업, 보건, 국제통계 등 20여개 부문, 약

33만여개의 국내외통계정보를 디스켓 CD-Rom등 전산매체에 입력, 국내외 수요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본 협회는 현재 데이콤 등 12개 부가가치통신서비스 사업체와 협조하여 [통계정보제공협의회]를 구성, 이를 주관하면서 대민간통계정보서비스를 하고 있음(개인단말기(PC)로도 이용이 가능)

(4) 통계간행물 보급 통계청, 행정자치부, 농림부, 노동부, 한국은행 등에서 발간하는 50여종의 주요통계간행물을 위탁 또는 복제발간하여 이용자에 보급하며 본 협회의 회원단체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책자에 한하여 무상으로 제공(1999년 3월 통계청 통계간행물 총판기관으로 지정)

(5) 사회조사분석사 관리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 다기화 되어감에 따라 사회 제현상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보다 양질의 통계조사 자료를 생산,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위해 2000년부터 정부고시를 통하여 배출되는 사회조사분석사에 대한 관리를 담당수행

(6) 통계에 관한 컨설팅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업무수행과정 또는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 통계정보로 이용, 통계기술에 관한 사항 등, 통계전반에 대한 조언, 자문에 응하고 있음

(7) 통계연수기관 1991년 통계청의 통계연수원 개설이전까지는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의 통계담당자에 대한 통계기술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매2년마다 세계각국에서 개최되는ISI(국제통계기구)총회에 본 협회 회원단체임직원이 참가토록 하는 등 해외교육훈련을 주선

(8) 통계인 친목도모 정부 및 민간의 모든 통계작성기관, 이용기관 및 연구기관과 이에 종사하는 통계인 상호간의 통계정보교환이나 업무협조가 원활하도록 주선하고 매년 9월 1日 [통계의 날] 기념행사와 친선체육대회, 등산대회, 바둑대회 등을 통하여 친선 도모 및 유대를 강화하며 통계의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

定 款

1963. 3.20 制定	1984. 3.19 改定
1971. 2. 2 改定	1985.10. 7 改定
1977. 5. 5 改定	1989. 3. 8 改定
1979. 7.19 改定	1991. 4. 2 改定
1981. 5. 7 改定	1992. 5.23 改定
1981.12.23 改定	1995. 4.18 改定
1982. 4. 9 改定	1996.11.23 改定
1983. 8.31 改定	2000. 2.25 改定
	2003. 2.26 改定

第 1 章 總 則

第1條 (名稱) 本會는 財團法人 大韓統計協會(以下 “本會”라 한다)라 稱한다.

第2條 (目的) 本會는 統計에 관하여 研究 및 實務에 從事하는 者の 知識과 技術의 向上, 統計人 相互間의 親睦과 紐帶를 圖謀하고 統計의 意識과 知識을 普及함으로써 韓國의 統計에 관한 理論 및 그 運用의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 (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두고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廣域市 또는 道에 支部를 둘 수 있다.

第 2 章 事 業

第 4 條 (事業) 本會는 第2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한다.

1. 統計學의 研究와 이의 委託 및 獎勵
2. 研究發表會, 講習會 等の 開催
3. 統計의 理論 또는 業務를 研究하기 위한 專門家の 國內外 研修 및 會議參席
4. 各種 統計調査의 支援

5. 統計에 관한 國內外 資料의 蒐集 및 普及
6. 統計에 관한 定期刊行物 및 圖書의 發行
7. 統計資料의 受託處理 및 電算室과 데이터터미널 設置運用
8. 統計有功者의 表彰
9. 其他 本會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必要事業

第 3 章 會 員

第5條 (會員資格) ① 本會의 會員은 本會의 設立趣旨와 事業에 贊同하는 團體 또는 個人으로 한다.

② 會員의 區分은 名譽會員, 贊助會員, 正會員, 準會員으로 한다.

1. 名譽會員은 本會의 育成에 貢獻한 者이거나 統計分野에 커다란 業績을 남긴 者 중에서 會長이 推薦하여 理事會의 同意로서 推薦한 者로 한다.
2. 贊助會員은 本會에 資産을 寄附한 者로 한다.
3. 正會員은 本會에 所定의 會費를 納入한 者로 한다.
4. 準會員은 本會가 定期的으로 實施하는 統計講座에 受講한 者 또는 統計刊行物を 年間 定期購讀한 者로 한다. 但, 準會員의 資格은 1年間으로 한다.

第6條 (會員加入節次) 本會의 會員이 되고자 하는 團體 또는 個人은 所定의 加入申請書를 本會에 提出하여 會長의 承認을 得하여야 한다. 다만, 準會員은 統計刊行物 定期購讀과 本會 開催 統計講座에 受講申請書を 提出하면 加入한 것으로 한다.

第7條 (會員에 대한 奉仕) ① 本會는 會員에 對하여 各種 統計調査와 資料의 利用方法 및 그 分析方法 등에 관한 指導 支援을 한다.

② 本會는 會員에 대하여 定期的으로 發刊되는 統計刊行物を 配付하여 本會가 保有하고 있는 國內外 統計資料를 利用하도록 한다.

第8條 (會員의 脫退와 除名) ① 會員이 脫退하고자 할 때에는 會長에게 그 뜻을 通知함으로써 脫退한다. 但, 이미 納入한 會費는 返還하지 아니한다.

② 會員으로서 本會의 名譽를 毀損하였거나 業務를 違反하였다고 認定되는 者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會長이 이를 除名할 수 있다.

第 4 章 任員 및 職員

第9條 (任員定數 및 資格) ① 本會는 다음 任員을 둔다.

1. 會 長 1人
2. 副會長 1人
3. 理事는 會長, 副會長을 包含하여 15人 以上 30人 以下로 하되 選任理事와 當然職理事로 構成한다.
4. 監 事 1人

② 任員은 非常勤으로 한다. 다만, 業務運營상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理事中 1人을 常勤으로 할 수 있다.

③ 選任理事는 統計에 關한 學識과 經驗이 있는 者 중에서 先出하고 當然職理事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統計廳 統計企劃局長
2. 農林部 農業情報統計官
3. 保健福祉部 情報化擔當官
4. 勞動部 勞動經濟擔當官
5. 서울特別市 情報化企劃擔當官
6. 韓國銀行 經濟統計局長
7. 韓國産業銀行 調查部長
8. 國民銀行 經濟經營研究所長
9. 農業協同組合中央會 調查部長
10. 大韓商工會議所 調查本部長
11.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調查統計部長으로 한다.

第10條 (名譽會長, 顧問) 本會의 運營上 必要에 따라 名譽會長과 若干名의 顧問을 둘 수 있다. 名譽會長은 本會에 功勞가 있는 者 또는 學識이 있는 者 중에서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 推薦하고 會長의 諮問에 應한다.

第11條 (任員의 選任) ① 會長 및 副會長은 選任理事 중에서 理事會에서 選出한다.

② 本會의 選任理事는 第9條 第③項에 該當하는 者 중에서 會長의 提請으로 理事會에서 選出한다.

③ 監事는 會計業務에 밝은 者 중에서 會長의 提請으로 理事會에서 選出한다.

第12條 (任員의 任期) ① 會長 및 副會長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② 選任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③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第13條 (任員의 職務) ①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여 會務를 總括한다.

② 理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會長의 業務에 重要한 事項을 審議決定한다.

③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이 缺員인 때 또는 有故時에는 會長의 業務를 代行한다. 但, 會長職務代行期間은 次期會長 選出時까지로 한다.

④ 監事는 本會의 財産과 業務執行現況을 監査하고 그 結果를 理事會에 報告한다.

第14條 (地位 및 報酬) 任員은 非常勤으로 한다. 다만, 任員은 豫算의 範圍 안에서 手當, 旅費, 機密費 등을 따로 支給할 수 있다.

第15條 (研究分科會) 本會는 第4條의 業務內容을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研究會를 두고 다음과 같이 專門分野別로 分科會를 둘 수 있다.

1. 人口, 雇傭統計分科會
2. 産業, 經濟統計分科會
3. 財政, 金融統計分科會
4. 地域統計分科會
5. 統計調查分科會

第16條 (事務分掌) ① 本會는 事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事務局을 두고 그 밑에 總務, 調査指導部, 研究 등 必要한 部署를 둘 수 있다.

② 事務局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本會의 日常業務를 執行한다.

第17條 (職員의 任免) ① 本會의 業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職員과

專門委員 및 研究員을 會長이 任免한다.

② 本會의 職制, 職務, 給與에 관한 事項은 會長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 5 章 會 議

第18條 (理事會) ① 理事會는 會長, 副會長을 包含한 理事로서 構成하며 會長은 議長이 된다.

② 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第19條 (理事會의 種類) 理事會는 定期理事會 및 臨時理事會로 한다.

1. 定期理事會는 每事業年度 終了 後 2月 以內에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2. 臨時理事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理事 過半數의 要請이 있을 때 召集한다.

第20條 (理事會의 議決事項) 다음 各 號의 事項에 대하여는 理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1.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에 관한 事項
2. 事業實績과 決算에 관한 事項
3. 協會運營 및 組織에 관한 事項
4. 任員의 選任과 解任에 관한 事項
5. 會員團體의 管理에 관한 事項
6. 定款改定 및 規程의 制定에 관한 事項
7. 其他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

第21條 (理事會의 議決定足數) ①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② 理事는 代理人으로 하여금 議決權 또는 選任權을 行使하게 할 수 있다.

③ 理事會의 議事に 관하여는 議事錄을 作成하고 그 結果를 議長 및 出席理事 3名 以上이 署名 捺印하여 保存하여야 한다.

第 6 章 財政 및 會計

第22條 (事業年度) 本會의 事業年度는 國家會計年度에 準한다.

第23條 (財産) 本會는 다음의 財産을 基本財産으로 한다.

1. 設立當時 寄附한 金壹拾萬원
2. 設立後 財産으로 指定하여 交付 또는 寄附한 財産
3. 理事會의 議決에 의하여 基本財産으로 한 財産

第24條 (經費) 本會의 經費는 第23條의 基本財産에서 발생한 果實 및 基本財産 이외의 財産, 補助金, 交付金, 寄附金, 會費, 事業收入, 統計刊行物의 販賣收入, 其他 雜收入으로 充當한다.

第25條 (剩餘金の 處分) 每 事業年度의 剩餘金은 翌年 事業年度로 移越하거나 基本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第26條 (決算) ① 會長은 會計年度의 決算 및 事業實績報告書를 監事에게 提出하여 監事의 意見을 받아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② 該當年度의 事業計劃 및 收支決算과 前年度의 決算은 會計年度 開始後 2月 以內에 主務官廳에 이를 報告한다.

第 7 章 解 散

第27條 (解散決議) 本會의 解散은 理事會에서 任員의 3분의 2 以上の 出席과 出席理事 3분의 2 以上の 贊成議決을 거쳐야 한다.

第28條 (清算人) 本會가 解散하였을 때에는 理事全員이 清算人이 된다.

第29條 (清算人의 職務) 清算人은 遲滯없이 財産狀況을 調査하여 財産目錄, 貸借對照表, 收支計算書를 作成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30條 (殘餘財産處理) 本會의 清算 및 解散後 殘餘財産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主務官廳의 許可를 받아 處分한다.

第 8 章 附 則

第31條 (附則) 本 定款은 主務官廳의 許可를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32條 (定款의 變更) 本 定款을 改定코자 할 때에는 理事會 3분의 2 以上の 同意를 얻어 主務官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대한통계협회 임원진 주소

직책	성명	소속	주소
회장	민태형	대한통계협회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7블럭 임광아파트 302-1703
부회장	신현균	대한통계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4933 우성아파트 502-903
선임이사	권태환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06-28
	김경중	통우회회장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성북리 155 수지엘지빌리지1차 102-13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21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69-46
	이재창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106 효성화운트빌 309-1201
당연이사	정택환	통계청 기획국장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노동부 노동경제담당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서울시 정보기획담당관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7 (별관 1동)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3가 110
		산업은행 조사부장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10
		국민은행 경제경영연구소장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2
		기업은행 조사협력부장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
		농협중앙회 조사부장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장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6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실장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45
		무역협회 조사부장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감사	정재구	경기대 교수	서울시 금천구 시흥4동 5-13 삼익A 103-2101호
사무국장	신경근	대한통계협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번지 서울통계사무소 103호

□ 회원의 구분

본 협회의 회원은 협회설립취지에 찬동하는 통계작성, 이용 및 연구기관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

(1) 명예 회원

본 협회 육성에 큰 공헌을 한 사람 또는 통계분야에 대한 업적이 현저한 사람 중 회장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추대된 사람

(2) 찬조 회원

본 협회에 자산을 기부한 사람

(3) 정 회원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개인으로서 소정금액의 단체회비 또는 개인 회비를 납부하는 단체 또는 개인

(4) 준 회원

본 협회에서 보급하는 통계간행물 또는 전산통계정보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단체 또는 개인

□ 회원에 대한 지원

(1) 본 협회가 위탁 또는 복제발행하여 보급하는 50여종의 각종 통계간행물 중 회원별로 필요로 하는 분야의 통계간행물을 무료제공

(2) 본 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통계정보제공사업(통계청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전산매체이용)을 이용할 때 우대(공표가능한 미공표 세부자료 이용추선 등)

(3) 본 협회가 주관하는 기념식, 교육훈련,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각종 행사와 해외연수등의 참가 및 이의주선

(4) 통계공로자표창(매년 9월 1일, 통계의 날 기념행사때)

대한통계협회에서는 통계청에서 발간되는 통계책자 및 CD 총판점으로 지정받아 판매 보급하고 있습니다. 자료보급은 연간 구독 신청과 수시 신청, 그리고 통계쇼핑몰을 이용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한통계협회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원시통계자료 이용수요에 부응하여 통계청에서 기구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저장하고있는 각종 원시통계자료를 자료수요자의 주문내용에 의거 가공제작하여 각종 매체에 수록 제공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있기를 바랍니다.

○ 통계자료의 종류 사업체를 대상으로한 자료 : 광공업통계조사 등 7종
가구를 대상으로한 자료 : 인구총조사 등 19종

○ 제공되는 통계자료의 형태 명부자료 : 개인 또는 사업체의 기본정보를 수록한 자료

원시자료(조사표수록자료) : 조사표에 수록된 항목별자료

집계자료 : 조사표자료를 통계표로 집계한 자료

통계조사별 자료제공범위

전체자료 제공범위 다운로드(raw.exe파일)

분야별자료 제공범위 다운로드(.hwp파일)

광공업통계조사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운수업통계조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이동통계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사회통계조사 농업총조사

농업기본통계조사 농가경제조사 어업생산통계

양곡소비량조사 산업총조사 건설업통계조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 국부통계조사 인구동태통계조사

도시가계조사 가구소비실태조사 인구이동특별조사

어업총조사 어업기본통계조사 어가경제조사
농산물생산비조사 고용구조통계조사 생활시간조사

- 자료제공 신청절차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조사별 자료제공범위 검색 한 후 대한통계협회 (02) 3443 - 7954 ~6로 문의하거나 서면으로 신청
- 자료제공 방법 통계청 또는 대한통계협회를 통하거나 이용자가 통계청의 시스템을 직접 이용하여 제공 (ON-SITE ACCESS : 현장자료출력 방식)
- 자료제공 매체 마그네틱 테이프, 용지출력, 모사전송, 디스켓, CD-ROM 등
- 자료제공 비용 통계자료제공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 부담

□ 통계자료 제공비용 산정규정

통계청통계자료제공규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자료이용자에게 전산처리에 의한 자료제공시 자료제공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1999년 1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 입력자료비 및 자료출력료 (통계청고시 제1998-2호)

가. 입력자료비

입력량	금액	입력량	금액
50 MB 이하	10,000원	151-300 MB	40,000원
51-100 MB	20,000원	301-500 MB	60,000원
101-150 MB	30,000원	501 MB 이상	80,000원

나. 자료출력료

자료출력량	금액	자료출력량	금액
1 MB 이하	20,000원	101-150 MB	150,000원
1-20 MB	30,000원	151-300 MB	200,000원
21-50 MB	50,000원	301-500 MB	300,000원
51-100 MB	100,000원	501 MB 이상	400,000원

○ 소프트웨어개발비(정통부고시2000-13(2000.2.8)) 산정방법

합계액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스텝수 × 스텝당 프로그램작성 인건비 × 특성별 보정계수
- 제경비 : 직접인건비 × 110 %
-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

○ 신청 및 문의(재단법인 대한통계협회)

- 전화 : (02) 3443 - 7954 ~ 6 FAX : 3443 - 7957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 서울세관 별관 103호(우 135-010)
- email : ksa@nso.go.kr

□ 통계협회지

대한 통계협회에서는 국내외의 통계소식과 통계발전을 위한 각종 통계논단, 통계연구결과, 통계조사경험수기 등의 정보를 연2회(상,하반기)에 걸쳐 '통계지'를 통하여 전국의 각 통계생산이용기관단체와 통계인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협회에서 우수사례와 내용들을 저명인사에게 청탁기고하는 한편 애독자의 다음 내용의 원고를 받아 수록 발간하고 있습니다.

- 통계에 관한 건설적인 의견
- 국제통계학회세미나 등 참석보고, 해외시찰소감
- 통계이론 및 기술에 관한 연구논문
- 기타 통계에 관한 연구, 경험, 수기 등

또한 통계협회에서 분산보급하고 있는 통계전산자료와 각종 통계서적이용안내를 부록으로 통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애독자의 많은 의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 본지에 투고되어 게재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통 우 회

□ 일반현황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번지 서울통계사무소 1층
우 135-010
- 전화 : 02-3444-4429
- 홈페이지 : www.statob.or.kr
- 2002년 결산
 - 당기수입 : 13,139천원
 - 당기지출 : 16,318천원
 - 기 금 : 43,798천원
- 회원수 : 406

□ 설립목적

軍政廳 庶務處 統計署로부터 調査統計局이 創立된지 어언 42週年을 맞이 하였습니다.

當局은 1945年 解放과 함께 在朝鮮 美國陸軍司令部 軍政廳 庶務處 統計署로서 日帝當時의 事務上 整備를 存續시켰으며 1948年 大韓民國 政府의 樹立과 동시에 南朝鮮 過渡政府로부터 政權移讓에 따라 公報處 統計局으로 移管되었으며 6·25事變後 政府의 還都와 아울러 1952年부터 統計行政의 實質의인 事務를 遂行하여 온 바, 統計機能 強化를 目的으로 한 政府機構 改正에 따라 1955年 2月 2日자 公報室에서 內務部에 移管 그후 統計事務의 圓滑한 運營은 勿論 合法的인 事務組織을 期하기 위하여 現在 中央各部處

에 分散된 統計機能을 有機的으로 綜合調整과 同時 統計의 正確性을 確立함에 있어서 統計體系의 整備, 統計調査의 重複除去와 統計의 改善發達을 期하고져 1962年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으로 發足하였습니다.

其間 오랜 歲月을 두고 統計란 過去와 現在의 現狀으로부터 法則性을 發見하고 이를 基礎로 未來를 豫測하는 科學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現代的, 合理的 行政遂行을 可能케 하는 必要不可缺한 道具가 되어 왔습니다.

50年代初의 우리나라 經濟는 貧困, 失業, 落後한 産業社會 또한 統計公職者로서 定着된 廳舍도 없이 방황하는 그 어려운 時期에 出發하여 35餘年間의 歲月을 우리 統計公職者는 同苦同樂하여 젊음을 불사르고 退職 또는 他機關에 轉職하여 뿔뿔히 헤어진 同志가 800餘名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는 各界各層에서 열심히 奉仕하고는 있으나 過去 統計局에서 苦樂을 같이 하던 옛 同僚들의 近況 및 消息조차 모르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여 오던중 調査統計局의 도움 아래 뜻있는 분들의 誠意로 同志들 相互間 親睦의 契機를 마련하고자 87年 3月 統友會가 正式發足하게 되었고, 現在 會員 300餘名の 모임체로 發展하였습니다.

其間에 熱意와 關心이 있는 會員들의 基金贊助로 2,000餘萬원이 造成되었으나 이는 앞으로 本會의 自立基盤構築을 위한 事業資金으로 積立하여 왔으며 따라서 本會運營은 基金을 축내지 않고 會費에만 依存하여 遂行하여 왔으나 이로 인하여 會員들의 負擔도 加重되거니와 本會 本然의 目的遂行에도 未盡한 狀態였습니다.

이제 自立成長을 위한 自體事業을 運營하여야 할 時期가 되었다고 보아 몇가지 事業을 하고자 먼저 必要的 法人 設立許可를 얻고자 主務官廳인 經濟企劃院에 許可申請을 하게끔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事業을 成功的으로 遂行하기 위해서는 會員들의 努力은 말할 것도 없고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의 絶對的인 協調가 있어야 하겠으며 그 리됨으로써 우리 會員들의 元氣는 百倍하여 名實相扶한 本會를 盤石위에 構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本會 會員의 來日의 希望과 生氣를 북돋아 주어 繼續國家, 社會發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趣旨가 있는 것입니다.

1987.11.

社團法人 “統友會” 設立準備委員會

委員長 咸 萬 準

□ 주요사업

- 이사회 및 총회 개최
- 회원 연락체계 정비
- 경조사 홍보
- 회원 친목 등산대회
- 복사기 설치 운영 (서울통계사무소 도서실)
- 한국인의 성씨 및 본관조사보고서 판매

1987.12.24. 制定
1989. 3.11. 改正
1990. 3.10. 改正
1991. 3. 9. 改正
1993. 3.13. 改正
2003. 3.20. 改正

第 一 章 總 則

第 1 條 (名稱) 本會의 名稱은 社團法人統友會(以下 “本會”라 한다)라 稱한다.

第 2 條 (目的) 本會는 會員相互間의 親睦과 相扶相助로서 會員의 福利 增進을 도모하며, 專門的이고 豊富한 經驗으로 統計業務遂行에 關한 建議 및 諮問에 應하여 統計行政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3 條 (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두고 必要에 따라 分會를 둘 수 있다.

第 4 條 (事業) 本會는 第2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한다.

1. 會員親睦 및 福利厚生事業
2. 相助制度의 運用 및 相助基金의 增殖事業
3. 慶事弔慰등 扶助事業
4. 統計 및 統計行政發展支援을 위한 調査 및 研究事業과 其他 受任用役事業
5. 電算用品 및 事務用品 供給, 統計情報 電算入力資料의 處理와 供給, 物價調査, 印刷, 프린트 등 附帶事業
6. 其他 上記 各號의 事業에 附帶되는 事業과 本會 目的達成에 必要한 事業

第二章 會 員

第5條(會員의 資格) 本會의 會員은 正會員, 準會員, 特別會員, 名譽會員으로 區分하고 그 資格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正會員

1948年 8月 15日 以後 統計局(調查統計局) 또는 統計廳에 在職하였다가 退職하였거나 他機關에 轉職한 사람

2. 準會員

統計廳에 在職中인 職員中에서 本會의 事業趣旨에 呼應하여 入會한 者

3. 特別會員

本會의 事業趣旨에 呼應하여 入會한 者(法人包含)

4. 名譽會員

本會發展에 寄與한 功勞가 顯著하다고 認定되어 理事會에서 推戴된 人士

第6條(會員의 加入 및 脫退) 本會의 會員이 되고자 할 때에는 入會願을 提出하고 所定의 入會金을 納付하여야 하며 本會를 脫退하고자 할 때에는 脫退願을 提出하여야 한다.

第7條(會員의 除名) 本會 會員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除名한다.

1. 本會 目的에 違背되는 行위를 하거나 本會事業을 故意로 방해한 會員
2. 會員으로서 威信과 品位를 損傷하는 行爲를 한 會員
3. 會員으로서 不適當하다고 認定되는 會員

第8條(會員資格의 喪失) 本會의 會員은 除名 또는 死亡함으로써 會員資格을 喪失한다.

第9條(會員名簿) 本會는 會員의 姓名, 住所, 職業, 電話番號등을 記載한 會員名簿를 印刷하여 會員에게 配布한다.

第三章 任 員

第10條 (任員의 種類와 定數) 本會에 다음 各號의 任員을 둔다.

1. 會 長 1名
2. 副會長 5名
3. 理 事 10名 以上 20名 以下
4. 監 事 2名(監事 2名中 1名은 準會員中에서 들 수 있다)

第11條 (任員의 選出) 本會의 任員은 總會에서 選出한다.

第12條 (任員의 任期) ①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② 本會의 任員中 缺員이 發生하여 補選이 必要한 경우에는 臨時總會를 召集하여 補選하며 그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13條 (任員의 任務) ①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統轄하며 總會의 議長이 된다.

②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時에는 會長이 指命한 副會長이 會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③ 理事는 會長·副會長을 補佐하며 本會의 理事會 構成員이 된다.

④ 監事는 本會의 會計를 監査한다.

第14條 (顧問) 本會 運營에 관한 諮問을 얻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顧問을 둔다.

1. 統計廳長과 本會의 會長을 歷任한 會員
2. 理事會에서 推戴된 人士

第四章 總 會

第15條 (總會의 區分) ①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區分한다.

② 定期總會는 每 事業年度 開始後 3月以內에 開催하고, 臨時總會는 必要에 따라 開催한다.

第 16條 (總會의 召集) ① 定期總會는 理事會의 決議에 따라 會長이 召集한다.

② 臨時總會는 會長 또는 會員 50名 以上の 要請에 따라 會長이 召集한다.

③ 會長은 總會를 召集하고자 할 때에는 會議目的, 日時, 場所, 會議案件, 其他 必要한 事項을 會議開催 7日前에 書面으로 會員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緊急을 要할 때에는 그 期間을 3日로 短縮 할 수 있다.

第 17條 (議決事項) 總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議하여 決定한다.

1. 定款의 改正
2. 任員의 選出 및 解任
3. 事業計劃의 承認
4. 豫算 및 決算의 承認
5. 監查報告의 接受 및 承認
6. 財産의 取得과 處分 및 借入
7. 其他 總會에 附議된 案件

第 18條 (議決定足數) ① 總會는 在籍正會員 10分の1 以上 出席으로 開會한다.

② 總會는 出席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 19條 (書面決議) 會長은 緊急을 요하는 事案에 대하여는 書面에 의한 贊否를 求하여 總會에 가름할 수 있다.

第 20條 (議事錄의 作成) ① 總會의 議長은 議事錄을 作成하고, 이를 次期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② 議事錄에는 議長과 出席理事 3名以上の 記名捺印을 받아야 한다.

第 五 章 理 事 會

第 21條 (理事會의 構成) ① 理事會는 第11條에 의하여 選出된 任員으로 構成한다.

- ② 會長이 有故時에는 會長이 指命한 副會長이 이를 代行한다.
- 第 22條 (理事會의 召集) ① 理事會는 會長 또는 理事 3分の 1이상의 要請에 의하여 會長이 召集한다.
- ② 召集通知는 第17條 3項을 準用한다.

第 23條 (議決定足數와 議事錄의 作成) 第19條, 第20條 및 第2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 24條 (理事會의 議決事項)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하여 議決한다.

1. 總會附議事項
2. 總會召集決定
3. 任員의 選・解任
4. 顧問委囑提請
5. 事業計劃 樹立 및 修正
6. 豫算編成과 追更 및 決算
7. 新規事業目的의 資産取得 및 重要資産의 處分
8. 資金의 借入
9. 入會金과 會費에 關한 事項
10. 會員의 入會
11. 報酬 및 手當의 支給對象, 金額
12. 組織의 編制와 定員
13. 相助金制度의 運用
14. 總會에서의 受任事項
15. 附帶事業의 決定
16. 會員의 除名
17. 其他 本會 運營에 關한 重要事項 中 會長 또는 理事 1/3以上の 提議事項

第六章 財 政 及 會 計

第 25條 (會計年度) 本會의 會計연도는 政府會計연도에 따른다.

第 26條 (會計의 區分) ① 本會의 會計는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로 區分한다.

② 一般會計는 會費, 入會費, 贊助金, 事業收入金を 歲入으로 하고 本會運營에 所要되는 經費 및 特別會計 轉出金を 歲出로 한다.

③ 特別會計는 一般會計轉入金과 第4條에 의한 事業收入金を 歲入으로 하고 事業費와 一般會計轉出金은 歲出로 한다.

第 27條 (事業計劃의 樹立 및 豫算編成) 會長은 每 會計연도初에 事業計劃書와 豫算(案)을 編成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 確定시켜야 한다. 다만, 不得已한 事由로 理事會의 承認을 얻지 못할 때에는 前年度 範圍안에서 執行하고 理事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 28條 (基金) 本會基金은 會員으로부터 徵收하는 會費, 贊助金 및 第4條에서 規定한 事業에서 發生한 利益金으로 造成한다.

第 29條 (基金의 運用) 基金은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事業을 위하여 運用한다.

1. 金融機關에 預置(事業資金除外)
2. 相扶相助金(婚喪費)의 支給
3. 第4條에서 規定한 事業
4. 其他會員의 厚生福利事業

第 七 章 機 構

第 30條 (事務局 및 事業本部) ① 本會의 業務를 원활히 遂行하기 위하여 事務局과 事業本部를 둘 수 있다.

② 事務局에 事務局長과 若干名の 事務職員을 두고 事業本部에는 本部長을 둔다.

第 31條 (其他 機構의 設置) 會長은 必要에 따라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各種 委員會와 附設研究所 및 其他 必要한 機構를 둘 수 있다.

第八章 補 則

第 32條 (解散) ① 本會는 會員 3分の2 以上の 贊成으로 解散을 議決할 수 있다.

② 本會가 解散을 議決하였을 때에는 統計廳長의 許可를 받아 解散登記를 하고 이를 申告한다.

第 33條 (清算人) 本會가 解散할 때에는 清算人을 總會의 決議에 따라 會員중에서 이를 選任한다.

第 34條 (殘餘財産의 處分) ① 清算人은 지체없이 財産의 狀況을 調査하여 財産目錄, 貸借對照表 및 收支計算書를 作成하여 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② 本會 解散時 殘餘財産이 있을 때에는 總會의 決議에 따라 處分한다.

第 35條 (運營規程) 本會 運營에 관하여 必要한 規程은 理事會의 議決에 의하여 會長이 定한다.

附 則

1. 本定款은 統計廳長의 設立許可와 法院의 設立登記를 畢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2. 本會의 最初의 會計年度는 本會가 設立된 날로부터 該當年度의 12月 31日까지로 한다.
3. 本會 設立當時의 統友會 會員은 本會 會員이 된다.
4. 本會 設立當時의 統友會의 基金會費等 또는 財産은 本會에 歸屬한다.
5. (施行日) 本 定款은 1987年 12月 24日부터 施行한다.
6. (施行日) 本 定款은 1989年 3月 11日부터 施行한다.
7. (施行日) 本 定款은 1990年 3月 10日부터 施行한다.
8. (施行日) 本 定款은 1991年 3月 9日부터 施行한다.
9. (施行日) 本 定款은 1993年 3月 13日부터 施行한다.
10. (施行日) 本 定款은 2003年 3月 20日부터 施行한다.

통우회 임원진 주소 및 연락처

직책	성명	주요경력	주소	전화
회장	김경중	전 통계청 기획국장 전 공정위 상임위원 전 한국증권전산(주) 사장	경기도 용인시 성북동 LG1차 빌리지② 102동 1303호	031-261-2663
부회장	이성재	현 (주) 더남 회장	광진구 구의1동 243-2 (주) 더남	02-452-3403
	조휘갑	전 통계청 조사국장 전 공정위 상임위원 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	송파구 가락동 78 한국정보보호진흥원	02-405-5000
이사	김완식	전 통계청 주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2동 신안1차④ 110동 1203호	031-409-3860
	김태현	현 한국교원대 교수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교원대 일반사회교육과	043-233-3612
	엄장희	현 한신정보(주) 대표이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126 유송③ 201동 704호	031-963-2360
	이원상	전 통계청 사무관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엘리트② 106동 101호	033-251-5547
	임동승	전 통계청 자료처리과장	송파구 오금동 114-25 (4층)	02-404-9651
	정재구	현 경기대 교수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산 6번지 경기대학교 응용통계학과	031-249-9418
	한필봉	전 통계청 과장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99-2 동신④ 5동 505호	032-343-0096
	안재걸	현 소비자보호원 부원장	서초구 염곡동 300-4 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203
	신현균	전 통계청 통계정보국장 현 통계협회 부회장	영등포구 신길3동 4933 우성5차④ 502동 903호	02-6265-9537
	송노익	전 문체부 국장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회관 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114
	윤재중	전 농수산부 과장	구로구 개봉본동 454-14	02-2612-5459
	주태섭	전 통계청 유통과장	마포구 도화동 357 현대② 108동 1302호	02-3273-1147
감사	윤기중	전 통계청 주사 전 대한상의 조사부장 전 중기협동조합 조사부장	강남구 대치4동 900-56 (백재빌딩 601호)	02-501-1228
사무국장	김응구	전 통계청 사무관	강남구 논현동 71 (서울세관 별관 104호) (사) 통우회	02-3444-4429

□ 입회 안내

회원은 off-line 또는 메일로 입회신청을 받사오니, 입회원서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메일(webmaster@statob.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납부안내

- 가입회비 : 20,000원
- 연 회 비 : 정회원 - 20,000원
임원 및 고문 - 50,000원
기관회원 -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함
- 납부방법 :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통우회 은행계좌로 입금 또는 총회나 수시로 직접 납부
- 계좌번호 : 국민은행 (817-01-0205-111)
우리은행 (113-04-105979)
제일은행 (128-10-123367)
예금주(통우회)

입 회 원 서

영역	한글	영문	한자
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직장 및 부서		전화번호
	전화번호	FAX 번호	E-mail
자택	주소		전화번호
학력	연도	학교	학과 학위
경력	연도	경력	
첨단분야			

본인은 貴會의 目的과 趣旨에 贊同하고 이에 入會코자 入會費 및 年會費와 함께 다음과 같이 申請합니다.

200 200 200

성명 (인)

통우회장 귀하

한국응용통계연구원

□ 일반현황

- 영문명칭 : Korea Applied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7-26 (삼환까뮈별관 4층) 우 150-010
- 전화 : 02-785-6070, fax : 02-785-5150
e-mail : kasri@chollian.net
- 홈페이지 : www.koris.org
- 법인성격 : 사단법인
- 설립일자 : 1970.10.10.
- 대표자 : 김효진
- 예 산 : 150,181만원(2002년)
- 인력(상근) : 24명

□ 설립목적

정치·경제와 기업경영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및 사회발전에 부응한 새로운 통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일반국민에 대한 통계인식 확대와 과학적인 통계이론 및 기법을 보급함

□ 주요사업

- 통계이론 및 기술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 경제·경영·환경 및 유통통계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 사회여론 조사 및 분석연구
- 학술용역, 원가계산, 시장조사 및 물가조사 연구분석
- 기업경영진단 및 경제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 통계자료의 컴퓨터처리 및 분석방법 개발연구
- 국내외 각종 통계자료의 수집 및 교류
- 전기 각항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계몽선전 활동
- 정기간행물·자료집 및 도서의 출판간행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연구원은 사단법인 한국응용통계연구원 (이하 “연구원”이라 함)이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내외에 지원이나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에 부응하여 정치·경제·사회 및 기업경영의 통계정보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확대와 통계이론·기법의 연구개발 및 정보화체계의 응용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연구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통계이론 및 그 실천기법과 정보화 시스템에 관한 연구개발
2. 통계 정보의 전산처리 및 분석기법의 개발
3. 국내외 각종 통계 정보의 수집·교류의 D/B화
4. 정치·경제·사회·경영·환경 및 유통에 관한 통계연구 및 조사분석
5. 시장조사(마케팅)·기업경영진단·원가계산·물가조사 등 학술연구용역
6. 정보자료집·정기간행물 및 관련 도서류의 출판간행
7. 기타 위임업무 및 전기 각항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연구원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찬동한 자 이여야 한다.

제6조 (입회) 연구원의 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의무) 회원은 본 연구원의 목적사업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으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제명) 회원이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위배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9조 (명예회원) 연구원의 취지를 찬동하여 적극적인 협조 또는 공로가 있는 자중 이사회회의 의결로써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구성) 연구원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5명 이내(이사장 1명 포함)
2. 감사 2명

제11조 (이사장)

1.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에 보고함으로써 취임한다.

제12조 (이사)

1.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본 연구원의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제13조 (감사)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연구원의 재정현황과 사업집행 현황을 감사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2. 감사는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 및 감사는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사회는 지체없이 후임 임원의 선출 여부를 심의해야하며, 이때 그 후임자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고문, 자문 및 연구위원) 고문·자문 및 연구위원은 이사장이 추천·선임하여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6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 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수시로 다음의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 ③ 감사가 요청할 경우
 - ④ 재적회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7조 (기능) 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소집절차 및 의결)

1. 총회의 소집은 1주일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2.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9조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주된 사무소에 의사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 임원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0조 (이사회) 연구원의 업무를 추진·집행하고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21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과 결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중요 사업계획의 결정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소집절차 및 의결)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수시로 소집하며 감사 및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23조 (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장 조 직

제24조 (조직) 1. 연구원의 정관상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둔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25조 (재정) 연구원의 재정은 다음 각호로 충당한다.

1. 입회금 및 회비
2. 사업수입

3. 찬조금 및 보조금
4. 기타 잡수입

제26조 (회계연도등)

1.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연구원의 전년도 수입지출 결산은 회계연도 마감후 2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 수입·지출예산안과 함께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27조 (정관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 및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의 결의로 감독청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제28조 (해산) 연구원의 해산은 재적회원 2/3이상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제29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연구원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한다.

부 칙

본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국응용통계연구원 임원진 주소

직책	성명	주소	전화
대표이사	김효진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2-39 한양빌라3동 202호	02-447-4677
이사	이동표	서울시 도봉구 창동 581-74	02-908-2084
	신완영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933-103	051-469-6554
	최용집	대구시 달서동 이곡동 성서서한2차 103-705	053-254-9555
	김호일	마산시 합포구 월영동 419	055-242-0315
	최종국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2가 95-1	02-7040-114
	이병일	의왕시 오전동230 성원1차⑩102-2003	031-453-6383
	오미희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에이스⑩202-906	031-917-3257
	민영광	서울시 강서구 등촌2동 365-195 두산⑩104	02-2637-6575
	이광수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157-18	02-357-8495
	염동식	서울시 강남구 도곡1동 934-10 우성⑩1-1111호	02-561-1266
감사	김용욱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 광장⑩10-1006	02-780-5379
	이영우	원주시 중앙동 126-8	033-764-9918

각종위원회명단

통계위원회

가. 통계위원 (30명)

(1) 당연직위원(15명)

기 관	직 위	연락처(☎)
통 계 청	청 장 (위원장)	(042)481-2100
통 계 청	통 계 기 획 국 장	(042)481-2030
재 정 경 제 부	정책조정심의관	503-9135
행 정 자 치 부	지방세제관	3703-5015
농 립 부	농업정보통계관	503-7250
산 업 자 원 부	기획 관리 실장	503-9146
정 보 통 신 부	정보통신정책국장	722-2041
환 경 부	기획 관리 실장	504-9230~1
보 건 복 지 부	기획 관리 실장	503-7519
노 동 부	기획 관리 실장	503-9709
건 설 교 통 부	기획 관리 실장	504-9010
해 양 수 산 부	기획 관리 실장	3148-6400
한국개발연구원	부 원 장	958-4114(교환)
한 국 은 행	부 총 재 보	759-4008
대한상공회의소	상 무 이 사	316-3522

(2) 위촉직위원(15명)

성명	연직	전공	연락처(☎)	비고
권태환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인구학	(연)880-6404 (자)873-7841	인구
김의섭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학	(회)629-7575, 7604 (H·P)018-412-8735	
김정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경제학	(회)02-751-5114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학	회760-1285,1245 자413-5168,011-9045-1950	
민태형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학	(회)042-821-1300 (자)031-263-5015	사회 정보
박래영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학	(연)320-1800, 1165 (자)031-915-2492	
박성현	서울대 계산통계학과 교수	통계학	연880-6569자573-2321 011-392-7098	
장하진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사회학	(사)02-386-6003~4	
신상민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경영학	(회)360-4120	경제 기준 조정 물가
박길성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사회학	(연)3290-2075 (HP)011-9881-2075	
안윤기	연세대 통계학과 교수	통계학	(연)2123-2539 (자)642-4687	
송위섭	이주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학	(연)031-219-2738 자595-6215, 017-204-2429	
이규민	동아일보 논설위원	화학	(회)2020-0240 (HP)011-9767-8389	기준 조정 물가
이재창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	통계학	(연)3290-2232 자974-3742, 017-351-5078	
정기준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학	(연)880-6370 자582-0267, 011-9775-6370	

※ 비교는 각 분과별 위원장 겸임사항임

나. 분과별 전문위원

(1) 기준·조정 분과위원회 (11명)

성명	현직	전공	연락처(☎)	비고
이재창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통계학	(연)3290-2232 (자)974-3742 (HP)017-351-5078	위원장
이재형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	경제학	(연)958-4180 (HP)016-326-6894 (HP)011-705-4492	전문위원
이건 (경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사회학	(연)2210-2649	"
신현균	대한통계협회 부회장	통계학	(회)3443-7954 (자)6265-9537	"
이계오	한국갤럽 자문교수	통계학	(회)02-3702-2582 (HP)019-9294-5123	"
이석훈	충남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응용통계학	(연)042-821-5438 (자)042-861-4449 (HP)016-435-4449	"
이승욱 (인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보건통계	(연)740-8853 (자)403-2044 HP.011-9084-3954	"
이태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교수	통계학	(연)3668-4691 (자)486-8406 (HP)019-284-8406	"
전명식 (정보)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통계학	(연)3290-2236 (자)974-2531 (HP)011-330-3290	"
정재구	경기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교수	통계학	(연)031-249-9418 (자)894-3787	"
김해중	동국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통계학	(연)2260-3221	"

※ 성명 아래의 ()는 타 분과위원회 위원 겸임사항임

(2) 인구분과위원회 (11명)

성명	연직	전공	연락처(☎)	비고
권태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인구학	(연)880-6404 (자)873-7841	위원장
은기수 (사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사회학	(연)031-709-7562 (자)031-781-4275	전문위원
김태현 (사회)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인구학	연043-230-3612,3204 (자)352-9181	"
이선이	아주대학교 사회학부 교수	사회학	(회)031-219-2780 (핸)017-260-6808	"
민경희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회학	(연)043-261-2182 (자)043-264-5907	"
변용찬 (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실장	사회학	(회)02-3808-130 (자)02-937-2860 HP.019-204-2860	"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위원	인구학	(회)356-0070	"
이승욱 (기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보건통계	(연)740-8882 (자)403-2044 HP.011-9084-3954	"
이희연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인구지리학	(연)450-3435 (자)402-4480	"
장영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선임연구원	도시경제 지리학	(회)726-1036 (자)2295-7849 (HP)011-9947-8849	"
최진호 (사회)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사회학	(연)031-219-2778 (자)031-711-5222 (HP)011-9989-5220	"

※ 성명 아래의 ()는 타 분과위원회 위원 겸임사항임

(3) 사회분과위원회 (11명)

성명	연	직	전공	연락처(☎)	비고
박래영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제학	(연)320-1800, 1165 (자)031-915-2492	위원장	
김태현 (인구)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학교육과 교수	인구학	연043-230-3612,3204 (자)352-9181	전문 위원	
노진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경제학	(회)715-7723 (자)783-7726 (HP)011-248-6037	"	
변용찬 (인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실장	사회학	(회)385-7364 (자)937-2860 (HP)019-204-2860	"	
김중렬 (경제)	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노동경제학	(연)961-4794 (HP)016-202-4217	"	
은기수 (인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사회학	(연)031-709-7562 (자)031-781-4275	"	
어수봉 (경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장	노동경제학	(연)041-560-1431 HP.011-9033-9137	"	
윤정로 (정보)	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사회학	(연)042-869-4625 (자)042-861-7467 (HP)011-422-4625	"	
윤혜원	연합뉴스 논설위원	신문방송학	(회)398-3495	"	
이영란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	(연)710-9490 (자)542-8111 (HP)017-203-8111	"	
최진호 (인구)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사회학	(연)031-219-2778 (자)031-711-5222 HP.011-9989-5220	"	

※ 성명 아래의 ()는 타 분과위원회 위원 겸임사항임

(4) 경제분과위원회 (11명)

성명	연직	전공	연락처(☎)	비고
송 위 섭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제학	(연)031-219-2738 (자)595-6215 017-204-2429	위원장
이 건 (기준·조정)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사회학	(연)2210-2649, 2159 (HP)011-705-4492	전문위원
이 용 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경제학	(회)3299-4258,4000	"
양 재 찬	중앙일보 경제전문기자	아랍어학	(회)751-5114 (HP)011-214-2473	"
성 소 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경제학	(회)958-4125	"
김 중 렬 (사회)	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노동경제학	(HP)016-202-4217	"
어 수 봉 (사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장	노동경제학	(연)041)560-1431 HP.011-9033-9137	"
서 승 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제학	(연)2123-2483 HP.011-750-0816	"
조 동 철 (물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노동경제학	(회)958-4046 HP.011-736-5702	"
정 희 수	서울경제신문 서울경제연구소장	경제학	(회)725-5986 (자)031-938-7292 HP.016-387-7292	"
윤 정 혜	인하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소비자학	(연)032-860-8112 HP.011-9975-8112	"

※ 성명 아래의 ()는 타 분과위원회 위원 겸임사항임

(5) 물가통계분과위원회 (11명)

성명	연직	전공	연락처(☎)	비고
정기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제학	(연)880-6370 (자)582-0267 HP.011-9775-6370	위원장
조동철 (경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경제학	(연)958-4046 HP.011-736-5702	전문위원
이인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조세실장	경제학	(회)3771-0020 (자)419-2576	"
임신빈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소비자보호위원장	경영학	(사)2252-2621 HP.011-713-3437	"
권혜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노동경제학	(회)780-3146	"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이사	사회학	(회)316-3441, 3453	"
박인례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사무총장	경제학	(회)790-4050 (자)386-6709	"
김종구	한국소비자보호원 수석연구위원	경제학	(회)3460-3292 (자)426-5419	"
이상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경제학	(회)675-9746(교1) (자)918-0559 HP.018-244-9087	"
함시창	경제정의실천연합회 재벌개혁위원	경제학	(회)2287-5055	"
조성종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	경제학	(회)759-4311	"

※ 성명 아래의 ()는 타 분과위원회 위원 겸임사항임

(6) 정보관리분과위원회 (11명)

성명	연직	전공	연락처(☎)	비고
박 성 현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 교수	통 계 학	(연)880-6569 (자)573-2321 HP.011-392-7098	위원장
김 병 천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경영학과 교수	전산통계학	(연)042-869-2912 (자)042-861-4315 HP.011-453-4999	전 문 위 원
문 숙 경	목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보통계학과 교수	전산통계학	(연)042-829-7773 (자)042-861-5905 HP.019-448-5905	"
이 상 구	한남대학교 정보통신· 멀티미디어학부 교수	전기전자 컴퓨터학	(연)042-629-7551 (자)042-485-2820 HP.016-349-8177	"
송 재 형	(주)타스크포스시스템 대표이사	SW공학	(회)02-855-8230 (자)031-499-7717 HP.016-236-1705	"
안 성 옥	배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전 산 학	(연)042-520-5409 HP.011-9062-9985	"
윤 정 로 (사회)	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사 회 학	(연)042-869-4625 (자)042-861-7467 HP.011-422-4625	"
윤 창 인	대외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 보 시 스템	(회)3460-1140 (자)513-5904	"
조 은 경	대덕대학 컴퓨터· 정보통신계열 교수	전 산 학	(연)042-866-0453	"
전 명 식 (기준)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통 계 학	(연)3290-2236 (자)974-2531 HP.011-330-3290	"
최 종 후	고려대학교 정보통계학과 교수	정 보 통 계 학	(연)041-860-1556 (자)042-483-0857 HP.011-402-0857	"

※ 성명 아래의 ()는 타 분과위원회 위원 겸임사항임

(7) 통계 품질특별분과위원회 (15명)

성 명	현 직	전 공	연락처(☎)	비 고
이 재 창 기준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통 계 학	통 계 학	
이 재 형 기준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	경 제 학	경 제 학	
이 석 훈 기준	충남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응용 통계학	응용통계학	
권 태 환 인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인 구 학	인 구 학	
민 경 희 인구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 회 학	사 회 학	
이 승 욱 기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보건 통계학	보건통계학	
박 래 영 사회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 제 학	경 제 학	
어 수 봉 사회, 경제	중앙고용정보원장	노동 경제학	노동경제학	
이 건 기준, 경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사 회 학	사 회 학	
성 소 미 경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경 제 학	경 제 학	
정 기 준 물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 제 학	경 제 학	
조 동 철 경제, 물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경 제 학	경 제 학	
임 신 빈 물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소비자보호위원장	경 영 학	경 영 학	
박 성 현 정보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 교수	통 계 학	통 계 학	
김 병 천 정보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경영학과 교수	전산 통계학	전산통계학	

통계청업무자체평가위원회

	성명	나이 (세)	성별	주요경력	e-mail
1	이석훈	49	남	충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교수	shlee@stat.chungnam.ac.kr
2	류제복	46	"	청주대학교 이공대학 통계학과 교수	jbryu@chongju.ac.kr
3	문숙경	43	여	목원대학교 정보통계학과 교수	moon101602@hanmail.net
4	이성덕	43	남	충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교수	sdlee@cbucc.chungbuk.ac.kr
5	김태현	55	"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thkim@cc.knue.ac.kr
6	김철교	54	"	배재대학교 경영정보학부 경영학과 교수	bridgekim@chol.net
7	김의섭	49	"	한남대학교 경상대학장(경제학과 교수)	eskim@mail.hannam.ac.kr
8	김정일	41	"	대전대학교 정보통계학과 교수	jikim@dju.ac.kr
9	이상구	47	"	한남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교수	sglee@mail.hannam.ac.kr
10	정규진	43	"	한남대학교 경상대학 정보통계학과 교수	gjeong@mail.hannam.ac.kr
11	배진한	53	남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jinhb@cuvic.cnu.ac.kr
12	이혜경	46	여	배재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신규)	hklee@mail.pcu.ac.kr
13	조성겸	46	남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skcho@cnu.ac.kr
14	전광희	46	남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장	jkh96@hanbat.chungnam.ac.kr
15	신동호	45	남	한남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신규)	dshshin@hannam.ac.kr
16	김병천	50	"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경영학과 교수	bckim@kgsm.kaist.ac.kr
17	안성욱	42	여	배재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sungohk@mail.paichai.ac.kr
18	박길철	42	남	한남대학교 멀티미디어학부 교수	gcpark@eve.hannam.ac.kr
19	박종태	39	"	평택대학교 정보통계학과 교수	tjpark@ptuniv.ac.kr
20	정강원	43	"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교수	winter@kongju.ac.kr

통계청통계품질심의위원회

부문	이름	근무처	E-mail	연락처	담당
사회 통계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shkang@sungshin.ac.kr	회사 02-920-7476	제조업생산
				집 017-235-4470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실	byc@kihasa.re.kr	회사 02-385-7364	도시가계
				집 019-204-2860	
	김재광	한국외대 정보통계학과	kimj@hufs.ac.kr	회사 031-330-4679	광공업동태
				집	
	최신애	한국리서치	sachoi@hrc.co.kr	회사 02-538-7766	도소매업동태
				집 011-309-9619	
경제 통계	문춘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경제학부	mooncg@unitel.co.kr	회사 02-2290-1035	지역소득
				집 016-375-1035	
	백용기	상명대 경제학과	egbaek@sangmyung.ac.kr	회사 02-2287-5190	경기종합지수
				집 016-480-5190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minhyung@kli.re.kr	회사 02-782-7186	사회통계조사
				집	
	이상은	경기대 응용정보통계학과	sanglee@stat.kyonggi.ac.kr	회사 031-249-9421	서비스업동태
				집 017-249-5454	
	노규형	R&R	mr@randr.co.kr	회사 02-3484-3000	농업기본
				집 011-268-0302	
농수산 통계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wanbae@snu.ac.kr	회사 031-290-2424	양곡소비
				집 016-363-6043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parksh@plaza.snu.ac.kr	회사 02-880-6500	위원장
				집 011-392-7098	
	박진우	수원대 통계정보학과	jwpark@mail.suwon.ac.kr	회사 031-220-2123	어업기본
				집	
	김태현	한국교원대 일반사회학과	thkim@cc.knue.ac.kr	회사 043-230-3612	인구이동
				집	

생물산업분류 전문가 위원회

관계기관	관련과	성명	전화번호	E-mail
산업자원부	생물화학산업과	황수성 사무관 최대근 사무관	02)2110-5663 F)02)503-9492	sshwang@mocif.go.kr
과학기술부	생명환경기준과	노경원 사무관	02)2110-3639 F)02)504-2745	kwrho@most.go.kr
농림부		김진진 사무관	02)500-2928 F)02)503-7798	jjkim@maf.go.kr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한창환 사무관 최교영 사무관	02)503-7585 F)02)503-7590	changun@mohw.go.kr chongsa@mohw.go.kr
환경부	자연생태과 자연정책과	성원기 사무관	02)504-9284	oyjun@me.go.kr
특허청	유전공학심사담당관실	이성우 과장 최규환	481-5588, 5598 F)472-3541	swoo@kipo.go.kr 1002호 유전공학과
기술표준원	생물환경과	김용주 연구관	02)509-7256 F)02)507-1922	yjkim@ats.go.kr
산업연구원		최운희 부연구위원	002)3299-3082 F)02)964-8232	yhchoi@kiet.re.kr
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벤처센터 사업운영실	유기찬 과장 정봉현 박사	860-4541~4 F)860-4549 860-4442	ryugc@mail.kribb.re.kr chungbh@mail.kribb.re.kr
KAIST	화학공학과	장용근 교수	869-3927 869-3902-3 011 9403-0872	ychang@mail.kaist.ac.kr
생물산업협회		김문기 이사	02)761-3176 F)02)780-3524	bioindus@chollian.net
바이오벤처협회		배형석 사무처장	02-552-4771 F)02)552-4840	hhkim@kobioven.or.kr
생물공학회	(동국대학교)	학회 학교	02)556-2164 02)2260-3365	
재정경제부	기술정보과	김진홍 사무관	02)503-9014	jheonong@mofe.go.kr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권혁진 사무관	02)3148-6531	khj4978@momaf.go.kr

인터넷산업분류 전문가 위원회

관계기관	관련과	성 명	전화번호	E-mail
정보통신부		단희수 사무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동기 박사	002)570-4040	infowell@kisdi.re.kr
정보통신기술인증원		고중홍 실장	002)580-0600	jhkoh@itc.or.kr
정보통신산업협회		왕안나	002)580-0602	anna@kait.or.kr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이동일 박사	042)860-6630	dongil@etri.re.kr
산업연구원		장윤종 박사 최봉현 박사		
인터넷기업협회		윤동일		
연세대학교		이호근 교수	002)2123-4470	hlee@base.yonsei.ac.kr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장	김우봉 교수	002)450-3300 017 228-6612	wbkim@konkuk.ac.kr
대진대학교		신기태 교수	018-710-4626	ktshin@road.daejin.ac.kr
한국전산원		신상철 부장	031)260-2303	ssc@nca.or.kr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전문가위원회

소속 학회/협회/ 기관	성명	근무처	담당분야	전화번호	E-mail
대한의학회	지제근 교수	서울대	병리과	02-760-3540	pathr@plaza.snu.ac.kr
	조승열 교수	성균관대	기생충과	031-299-6250	seungyl@yurim.skku.ac.kr
	박희숙 교수	순천향대	내과(종양)	02-709-9185	parkhs@hosp.sch.ac.kr
	우영남 교수	한양대	비뇨기과	02-2290-8596	w1004@hanyang.ac.kr
	황 건 교수	인하대	성형외과	032-890-3514	jokerhg@inha.ac.kr
	박기덕 교수	이화여대	신경과	02-760-5280	pkd1165@mm.ewha.ac.kr
	진경현 교수	경희대	안과	02-958-8460,51	khjinrmd@khmc.or.kr
	권오정 교수	한양대	외과	02-2290-8454	ojkwon@hanyang.ac.kr
	양훈식 교수	중앙대	이비인후과	02-2260-2004	yhs1jr@hotmail.com
	방동식 교수	연세대	피부과	02-361-5734	dbang@yumc.yonsei.ac.kr
	선 경 교수	고려대	흉부외과	02-920-5436	ksunmd@korea.ac.kr
	최종영 교수	카톨릭대	내과	02-590-1425	jychoi@cmc.cuk.ac.kr
치과의사협회	신금백 교수	전북치대	구강내과	063-250-2054,17	oralmedi@moak.chonbuk.ac.kr
약학회	김병각 교수	서울대	약학	016-268-8311	yunchil@naver.com
간호학회	박현애 교수	서울대	간호학	02-740-8827	hapark@snu.ac.kr
건강보험공단	윤병식 소장	건강보험연구원	건강보험연구	02-3270-9380	bsyoon@nhic.or.kr
심사평가원	이규덕 위원	심사평가원	소아과	02-705-6015	gdlee@hira.or.kr
한의사협회	김현수 이사	김현수한의원	한방	02-652-0037	kimstep@chollian.net
의무기록협회	서진숙 회장	삼성서울병원	의무기록	02-3410-2941	jinssuh@samsung.co.kr
보건복지부	허영주 사무관	질병관리과	예방의학	02-503-7543	drhur@mohw.go.kr
국립보건원	정은경 과장	전염병정보관리과	전염병통계	02-380-1458	jeong68@hanmail.net
통계청	통계기획국	기획국장	기획총괄	042-481-2030	taikjying@nso.go.kr
	인구분석과	인구분석과장	사망원인통계	042-481-2250	cslee@nso.go.kr
	통계기준과	통계기준과장	질병분류	042-481-2051	choje@nso.go.kr

관 련 법 령

민 법

제 3 장 법 인

제 1 절 총 칙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 (법인설립의 동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 (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 (영리법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2 절 설 립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①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50조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 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1조 (사무소이전의 등기) ①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제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2조 (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2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29] [[시행일 2002.7.1]]

제53조 (등기기간의 기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54조 (설립등기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 설립등기이외의 본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6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 3 절 기 관

제57조 (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0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 ① 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

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01.12.29] [[시행일 2002.7.1]]

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62조 (이사의 대리인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65조 (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66조 (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제67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68조 (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 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69조 (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0조 (임시총회) ①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71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72조 (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3조 (사원의 결의권) ①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조 (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①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 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76조 (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4 절 해 산

제77조 (해산사유)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78조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9조 (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81조 (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82조 (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4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85조 (해산등기)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86조 (해산신고)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 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 ② 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제90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제91조 (채권변제의 특례) ① 청산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93조 (청산중의 파산) ①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 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제94조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5조 (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제96조 (준용규정) 제58조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 5 절 별 칙

제97조 (별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정 75.12.31 법률제2814호

일부개정 95. 1. 5 법률제4932호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관의 준칙등)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설립허가기준)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징수,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임원등) ① 공익법인에는 5인이상 15인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연, 감사는 2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⑤ 이사회에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 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5.1.5>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⑦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⑧ 감사는 이사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 및 결산등) ①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개시전에 익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익년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요강, 회계규칙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 또는 무상대부한다.

제14조 (감독) ①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주무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익을 목적사업 이외에 사용할 때

2. 당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제15조 (조세감면등) 공익법인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 (설립허가의 취소) ① 설립허가를 한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2.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3.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4.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6.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7. 정당한 이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 달성을 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경과되어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다.

제16조의2 (청문) 주무관청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12.13]

제17조 (감사등) ① 주무관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기타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5.1.5>

제18조 (권한의 위임) 주무관청은 이 법에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급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 (벌칙) ① 제4조제3항이나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때
 4. 감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
- ③ 이사 또는 감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공익법인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추천한 감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현존공익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공익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 ③ (동전) 부칙 제2항의 공익법인은 6월내에 이 법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와 정관의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동전)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 칙 <95.1.5>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주무관청은 이 법 시행후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사의 수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이사취임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이사취임승인을 할 수 있다.

부 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76. 4. 1 대통령령제8059호

일부개정 91. 2. 1 대통령령제13282호(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91. 5.31 대통령령제13377호

일부개정 93.11.20 대통령령제14008호

일부개정 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95. 7. 6 대통령령제14712호

일부개정 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일부개정 98.12.31 대통령령제15971호(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법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4.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 ② 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제3조 (정관에 기재할 사항) ① 공익법인의 정관에는 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원 및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 ② 제1항제1호의 사업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4조 (설립허가신청) ①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7.6>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기부신청서 1부,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회비징수에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5. 삭제 <91.5.31>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1부
 7.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 이후 그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8.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 ② 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설립허가시에 붙일 조건) ①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사단법인의 경우에 회비에 의하여 경비에 충당할 비율과 회비징수방법 기타 회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 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
3.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함에 있어서 제1항 제2호의 조건을 반드시 붙이되, 주무관청이 수혜자의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한정할 범위에 관하여 미리 재정경제원장관(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설립이 허가되는 공익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7.6, 98.12.31>

제7조 (임원취임승인신청) 공익법인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임원취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주무관청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고, 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제5호·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91.5.31, 93.11.20, 95.7.6>

1. 임원의 선임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이력서 1부
3. 삭제 <95.7.6>
4. 취임승낙서 1부
5. 민간인신원진술서 4부
6. 호적등본 1부
7.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임원의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제8조 (재산이전의 보고) 공익법인(재단법인에 한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월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재산이전보고서에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설립등기등의 보고) 공익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 등을 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7.6>

제10조 (정관변경허가신청) 공익법인이 민법 제42조제2항, 동법 제45조제3항,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7.6>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2. 정관개정안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 (수익사업의 승인신청) ① 공익법인이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경영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7.6>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3.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1부
 4.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② 공익법인이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조제5항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상속세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말한다. 이 하 같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공무원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7.6>

1. 출연자(출연자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출연자를, 출연자가 기타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출연자 또는 이사의 다음의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 가.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나.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다.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라. 처의 3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 아.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 자. 2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한다"고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개정 95.7.6>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제2호·제4호 및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③ 특수관계가 없는 이사가 재임중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2월 이내에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이사를 재임하여야 한다. <개정 95.7.6>

제13조 (주무관청의 감사추천) ① 주무관청은 법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감사 1인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허가시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추천을 행함에 있어서는 공익법인에게 후보를 선정하여 추천을 의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추천의뢰된 자중에 적격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추천 의뢰를 요구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으로부터 감사 1인을 추천한다는 뜻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추천의뢰가 없는 경우 또는 주무관청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된 감사가 임기만료 기타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④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종전에 그 법인의 감사 중 1인을 주무관청이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새로이 법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의 감사중 이사회에서 지명한 자 1인은 주무관청에서 추천한 감사에 대한 취임승인이 있는 날의 전일에 퇴직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상근직원의 정수 승인신청) 공익법인이 법 제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직원의 정수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기구도표와 부문별 또는 개인별 관장업무를 명시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사회의 소집승인 신청)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소집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6조 (재산의 구분) ① 공익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③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기본재산의 처분) ①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11.20, 95.7.6>

1. 처분재산명세서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인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에 한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이사회회의록 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95.7.6>

③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담보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2. 피담보채권액

3. 담보권자

4.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5. 이사회회의록 사본

④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8조 (장기차입에 대한 허가) ① 공익법인이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장기차입은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95.7.6>

② 공익법인이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단기차입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수지를 명확히 하여 당해연도내에 반드시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업계획등의 제출) ① 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20조 (재산관리) 공익법인은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예산편성요강) ① 공익법인의 예산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 및 계정과 목별로 구분하여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편성한다.

② 제1항의 추정대차대조표는 당해연도말 현재에 추정되는 재정상태를 표시하되, 전년도말 현재와의 비교증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추정손익계산서에는 당해연도에 발행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되, 전년도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표시하여야 한다.

④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에는 각각 그 추정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2조 (회계원칙) ① 공익법인의 회계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공익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 (회계의 구분) ① 공익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24조 (재산의 평가) 공익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5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 공익법인은 그 정관에 당해 공익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이 귀속될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공익법인의 청산인은 해산후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잔여재산이 귀속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없이 권리이전절차를 취한 후 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재산은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법인의 주무관청이 교육부장관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관리하되,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하거나 무상대부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1.2.1, 94.12.23, 95.7.6>

제26조 (이사취임의 승인취소사유)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또는 이 영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감손, 현저한 부당행위등으로 인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할 우려를 생기게 한 때
3.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때

②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이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의2 삭제 <97.12.31>

제27조 (법인사무의 감사) ① 주무관청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공익법인에게 관계 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감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기타 관계전문기관에 의한 감사는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액수이상의 기본재산을 관리·운용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실시한다. <신설 95.7.6>

제28조 (준용)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되, 따로 정한 사항이 없는 때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익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197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영의 적용대상이 될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통지) 주무관청은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그 소관법인 중 법 및 이 영의 적용대상이 될 공익법인을 확인하고 그 뜻을 당해 공익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익법인은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그 감사중 1인을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는 한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중 1인을 추천의뢰하여야 한다.

④ (수익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익법인중 수익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은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수익사업의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상근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익법인중 상근직원을 두고 있는 법인은 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상근직원의 정수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익법인은 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이 영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와 정관의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91.5.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11.20>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매도 · 증여 · 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95.7.6>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매도등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2호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장기차입의 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차입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 2000. 1.12 법률 제6118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3조 (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 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7조 (지원사업의 선정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유형내에서 공익사업 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제출기한 2월 전에 공고하거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와 위원자격,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3월말까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보고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세감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우편요금의 지원)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보조금의 환수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할 비영리민간단체가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 또는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3조 (벌칙) ①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정 2000. 4.17 대통령령 제16783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업비"라 함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경비를 말한다. 다만, 인적 경비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성격의 경비에 한한다.

제3조 (등록절차)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중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에게, 그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칙 1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 총회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등록을 변경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하며, 등록의 변경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3.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시·도를 달리한 경우를 말한다)
4.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제4조 (등록의 말소) ①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한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공익사업의 유형)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2.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3. 전국적 또는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제6조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중

에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2.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3. 3급(시·도의 경우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비영리민간단체에서의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최한다.
- ④ 위원회의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2.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3. 기타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

제8조 (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적인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독창성
2. 경제성
3. 파급효과
4.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5.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6.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7.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유형별 배정금액

2. 심사성적

3. 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

③ 제2항제1호의 사업유형별 배정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제출된 신청사업 수 및 신청사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9조 (선정기준의 공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의 공고는 2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의 게재에 의한다.

제10조 (사업계획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3.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방법

4. 기대효과

5. 사업비 집행계획

6.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1조 (사업보고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추진실적

2. 자체평가내용

3. 사업비지출 회계보고

4.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2조 (사업평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당해 연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행정지원 및 협력)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을 위하여 사업관련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우편요금 감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중 우편요금 별·후납 우편물에 대하여는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한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의 고시로 정한 감액률이 100분의 25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당해 연도 지원 사업의 선정 전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 및감독에관한규칙

전문개정 1999.12. 9 재정경제부령 제111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 소속하에 있는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 소속하에 있는 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 (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 (설립관련 보고)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7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서 1부

제8조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 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 (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 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내용을 기재한 법인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제11조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3.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4.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5.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7.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갱생보호공단
8.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개발원
1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11.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12.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13.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15. 학술진흥법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
16.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17.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문고
18.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19.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2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한 사학진흥재단
2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제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
연합
2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23.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과학관
2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2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26.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27.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28.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법인
29. 모자보건법에 의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3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재단법인 북한이탈주
민후원회
- 31의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32. 삭제 <2002.3.30>
33.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
34.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35.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36.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37.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38.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한 재외동포재단
3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
리법인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
천을 받아 제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이내에 종
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
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 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② 영 제36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5.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비와 중소기업 경영지원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8.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9.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0.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1.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2.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4.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 관한법률 제46조제2호 및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15.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및 국궁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광

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6.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추천을 받는 법인의 사업목적, 기부금 모집의 목적,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등이 기재된 지정기부금단체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3.30>

⑤ 제1항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지정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일이 경과한 후에도 영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제1항제39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2.3.30>

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손금인정단체 추천요령

- 담당부서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 담당자 : 백순길, E-mail : bfamily@mofe.go.kr, 전화번호 : 02-2110-2318

☐ 대상법인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公益性이 큰 비영리법인으로서
-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및
- 기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9호)

☐ 손비인정 한도

- 지출하는 寄附金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5% 내에서 손비 인정

☐ 추천자 : 주무관청의 장

☐ 추천방법 : 주무관청에서 공문으로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에 추천

☐ 추천시 제출서류

- 설립허가증 사본
- 등기부등본
- 정관
- 사업계획서
- 최근 3년간 예산·결산서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3호의 2 서식)
- * 주무관청에서 작성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					
1. 추천대상단체 인적사항					
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 개시일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내용 (별지 작성가능)					
2. 기부금관련					
가. 기부금 모집의 목적(별지 작성가능)					
나.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단위 : 억원)					
년		년		년	
년		년		계	
다. 기부금의 용도 및 관리방법(별지 작성가능)					
위 단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인세 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기관의 장) ㉑ 제정경제부장관 귀하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김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김품의 가액. 다만, 기부
김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김품은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방헌김과 국군장병 위문김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김품의 가액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
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의 다
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 수선비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5의2.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제8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하 이 호에서 "시가"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신설 2002.12.30>
-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이자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9. 자산의 평가차손
10. 제세공과금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2.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1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 13의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의·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
15.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16.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이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17. 제1호 내지 제16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아. 삭제 <2001.12.31>

자. 삭제 <2001.12.31>

차. 삭제 <2001.12.31>

카. 삭제 <2001.12.31>

타. 삭제 <2001.12.31>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라. 삭제 <2001.12.31>

마. 삭제 <2001.12.31>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② 제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③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

업종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8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과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③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76조 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2001.12.31, 2002.12.30>

1.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이라 한다)과 법 제24조제2항 각호의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월결손금(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 100분의 50

3.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100분의 5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나. 법 제2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

다.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 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은 가목 내지 다목의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으로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익금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나. 법 제2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④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이 법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구분하여 작성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개정 2002.3.30>) ① 영 제36조제1항 제1호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3.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4.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5. 어린이육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중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7.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경생보호공단
8.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개발원
1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11.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12.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13.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15. 학술진흥법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
16.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17. 도서관및도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문고
18.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19.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2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한 사학진흥재단
2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
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환경보전법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
2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23.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과학관
2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2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26.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27.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28.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법인
29. 모자보건법에 의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3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재단법인북한이탈주
민후원회
- 31의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32. 삭제 <2002.3.30>
33.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
34.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35.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36.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37.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38.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한 재외동포재단
3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연
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
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 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
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 ② 영 제36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5.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비와 중소기업 경영지원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8.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9.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0.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1.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2.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4.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 관한법률 제46조제2호 및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15.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및 국궁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6.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추천을 받는 법인의 사업목적, 기부금 모집의 목적,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등이 기재된 지정기부금단체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3.30>

⑤ 제1항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지정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일이 경과한 후에도 영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제1항제39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2.3.30>